

연구보고 2010-06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문 준 조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s for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Response to
FTAs with Advanced Countries

연구자 : 문준조(선임연구위원)

Moon, Joon-Jo

2010. 10. 29.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IT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전자금융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II.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 등 신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 요구
 -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공급만 허용하거나 또는 내 현지법인·지점 등 상업적 주재에 의하도록 금융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금융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제도 도입
 -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강화 필요성

- 국경간서비스 공급은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후 허용 상품과 허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지침을 마련함.

▶▶ 주제어 : 전자금융서비스, FTA, 전자화폐, 신금융상품, 전자금융 거래법, 상업적 주제, 국경간 서비스 공급

Abstract

I . Necessity and Purpose of Study

- With the recent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forms of new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supplied to financial customers, in particular in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EU) with which Korea has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 In this context, we have the urgent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effect on domestic financial markets after those agreement become effective in the near future.

II . Outline of Substantial Contents

- Requirement that new financial services such as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be supplied in the mode of commercial presence
-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new financial services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FTA, relevant domestic laws will be amended in that only some kinds of them be permitted to be provided in domestic financial markets or they be provided be in the mode of

commercial presence, for examp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corporation or branch office established in Korea.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requiring permission for new financial services, respectively.

○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quiring permission for new financial services respectively, considering potential demand on any relevant new services and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r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existing similar services which are liable to compete with them.

○ A negative system i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2007 will be required to be adapted into a positive system as far as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are concerned.

Enhancement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Services Customers

○ Because the service suppliers are present out of Korean territory, in the case of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on those services permitted to be supplied in Korea and the scope of relevant permissions

III. Expected Effects of Study

Preparing the guidelines on finding out what are the positive effects which will produce the advancement of Korea's financial industry and how we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negative effects on the industry.

➤ **Key Words** :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FTA**, electronic money, new financial service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ommercial presence, supply of cross-border service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전자금융의 현황과 법적 규제	17
제 1 절 전자금융의 개념	17
제 2 절 전자금융의 출현 배경과 발전	20
1. 출현 배경	20
2. 발전 연혁	21
제 3 절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와 유형	23
1.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	23
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26
3. 전자증권거래	26
4. 인터넷뱅킹	30
5. 인터넷보험	31
6. 전자지급결제	32
제 4 절 미국과 EU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41
1. 미 국	41

2. E U	43
3. 시사점	44
제 5 절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와 법적 규제	45
1. 기존의 법체계과 적용상의 문제점	45
2. 전자금융거래법	49
3. 전자금융의 발전을 위한 과제	74
제 3 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83
제 1 절 개방 현황	83
1. 의 의	83
2. 금융서비스 개방 경과	84
3. 금융부문별 개방현황	88
제 2 절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91
제 4 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93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93
제 2 절 GATS 및 FTA와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96
1. GATS와 서비스시장개방	96
2. FTA에 의한 금융시장개방과 그 유형	104
제 3 절 한·미 FTA	107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	107
2. 주요 타결내용	110
제 4 절 EU와의 FTA와 금융시장 개방	146
1. 의 의	146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146
3. 시장접근	147
4. 예외조치	148
제 5 절 FTA 금융서비스개방의 평가와 전망	149
제 5 장 FTA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법제개선	153
제 1 절 문제의 소재	153
제 2 절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154
1. 공정한 경쟁의 확보	154
2. 규제체제 확립	155
제 3 절 FTA 관련 쟁점별 법적 대응방안	158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158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159
3. 전자결제서비스의 허가·등록	161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162
5. 금융정보 해외이전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163
제 6 장 결 론	167
참 고 문 헌	17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꾸준히 많은 국가들과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득실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타결을 즈음하여서도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을 놓고 이해득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FTA의 협상과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힘든 과정이며 FTA 체결이후의 국내의 중장기적인 전체적인 이익의 제고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써 1960년대 이후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를 통하여 국부를 쌓아온 대표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단순한 상품의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 성장 원동력으로 삼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도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수출확대와 더불어 국가경제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수출 위축으로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수출에 따른 외화의 유입은 크게 이루어져 현재 상당한 수준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제조부문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금융부문의 발전은 이루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금융부문의 발전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선진국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입이 어떠한 면에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비스 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은 WTO 출범이후 국제적인 자본흐름이 확대되고 차츰 범세계적 통합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활동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는 상대국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의 쟁점사항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¹⁾ 한·미 FTA에서는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쟁점사항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중 서비스부문에서의 쟁점은 주로 법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금융분야에서의 타결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금융서비스 부문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아직 발효하지 않았지만 미국, EU 등과의 FTA가 국내 금융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선진국들의 금융서비스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 금융부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다 선진적인 금융산업을 구축함으로써 금융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최근의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 금융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상

1)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FTA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의 FTA는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 내국민대우, 무역규범 등 필수적인 요소외에 투자보장, 조세,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법 조화 등 체약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FTA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산업적 파급효과는 지대하게 될 것이다.

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전자금융상품이 판매되는 등 우리나라가 이들과의 FTA 체결과 더불어 대비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미국 등 전자금융이 발전된 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한 국내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전자금융이라 함은 최근의 IT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금융업무에 자동화·전자화를 도입하여 Network화하는 것이다. 제2장은 이러한 전자금융의 개념과 발전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별 개방현황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과 한·EU FTA 등 선진국들과의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선진국들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법제적 과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금융서비스 시장 특히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2 장 전자금융의 현황과 법적 규제

제 1 절 전자금융의 개념

전자금융은 최근에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금융 분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인터넷 또는 전용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의미하며, 모바일 데이터통신에 이용되는 이동통신기기, ARS에 연결된 전화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 규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고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또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를 지칭하되, 일반적으로 개시에서 종료까지 비전자적 수단의 개입 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포함한다.

예컨대,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TM, Tele Marketing)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비전자적 수단)이 개입되므로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대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자금융은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별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그 전달경로(delivery channel)로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의 인터넷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달채널로서 이용됨에 따라,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자금융이라는 새로운 업무 또는 사업영역을 갖게 된 것이다.²⁾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시키는 것으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전자화폐지급(electronic money payment)·선불전자지급(electronic pre-paid payment)·인터넷 신용카드지급·모바일지급·구매카드지급³⁾·결제대금예치(escrow)제의 이용에 의한 자금결제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에서는 ‘전자지급거래’를 자금 지급인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

2) 전자금융이 가져다 준 변화는 대단히 크다. 무엇보다도 처리 기술의 진전이나 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혁신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 물품의 구매 또는 판매시에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거래은행과 카드발행계약을 한 구매기업이나 판매기업이 구매대금 결제나 판매대금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거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6), p.7.

한편 최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즉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를 전자금융거래로 파악하는 입장⁵⁾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의 전산화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⁶⁾

은행거래 등 지급거래가 전자적 수단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증권분야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전자적 수단이 그 활성화에 큰 기여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분야에서의 거래는 보험제도와 보험 상품의 특성으로 보아 지급거래나 증권거래 분야 등과는 달리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⁷⁾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전자거래는 보험계약 자체보다는 보험계약 관련된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험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⁸⁾

한편,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적 수단의 이용은 종전의 금융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적절하게 제어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국경간 금융거래에서는 더욱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4.3), p.3;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박영사, 2007), p.10.

6) Ibid., p.11.

7) 보험의 내용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보험계약은 1회성이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험에 대해서는 대면성을 증권거래 또는 은행거래보다 대면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손진화, op.cit., pp.18-19.

8) Ibid.

제 2 절 전자금융의 출현 배경과 발전

1. 출현 배경

정보통신기술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전자금융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IC칩 카드⁹⁾, 암호화 기술(cryptography)¹⁰⁾, 컴퓨터의 보편적인 보급, 인터넷 기술의 발전 기타 관련 기술의 통합으로 전자금융도 전자화폐의 사용 및 사이버뱅킹(cyber banking)이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역할이 금융중개 및 지급결제서비스에서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처리와 통신의 융합, 정보처리 및 전달의 신속, 저렴화, 급속한 보급속도라는 특징을 갖는 정보기술 혁신은 새로운 금융거래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가져다 주었으며, 금융기능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편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금융거래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됨으로써,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정보처리기술의 향상으로 그 불확실성과 함께 정확하게 계산하여 위험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다른 개발상품을 결합하여 위험과 수익의 특성을 변화하고 시장 거래에 알맞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통신망 확산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업무 전산화 등의 은행 내부적인 통신 뿐 만 아니라 홈뱅킹, 펌뱅킹 등 대고객 통신에

9) IC칩의 특징은 종전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 비해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연산능력도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0) 전자금융거래에서 암호화는 그 보급과 확산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암호화기술로는 비밀키(private key) 방식과 공개키(public key) 방식을 들 수 있다. 보안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암호화만이 가상공간에서의 거래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으며, 부실한 암호화가 통용된다면 금융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ATM망,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물리적·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창구나 증서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공간에서 금융상품거래가 촉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은 개개의 고객에 대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서비스 제공채널의 다양화 및 가상은행의 등장으로 은행점포의 역할이 크게 감소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전자금융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을 위한 고도의 정보서비스 업무를 개발하고 가정과 사무실을 직접 연결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을 경영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기법(vitualization)이 발달하고 있다. 가상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수단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활용됨으로써 인터넷 뱅킹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쌍방향 TV 등을 통해서도 전자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말하며,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결제수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한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간 자금이체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수표 등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발전 연혁

전자금융거래는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증권거래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그 뒤를 이어 은행거래 분야에서의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고 차츰 복잡한 거래 성격을 갖는 증권부문의 발행시장과 보험거래에까지 확산·발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개발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비금융기관에 의한 전자금융관련 서비스제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제1단계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은행내의 점포간의 독자적인 온라인화 및 업무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CD/ATM기를 도입하고, 지로, 어음·수표 등 장표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창구업무 축소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장표방식에서 비장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제2단계는 금융네트워크 구축 단계로서 금융기관 상호간 및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공동망서비스, PC 등을 이용한 홈뱅킹/멤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였다. 금융공동망서비스로서는 CD(현금인출기), ARS(자동응답서비스), 타행환, CMS(자금관리서비스)등이 있으며, PC·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창출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는 홈뱅킹/폰뱅킹이 있고, 또한, 카드를 이용한 상거래 대금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이 있다.

제3단계는 전자화폐 및 은행의 무점포화 단계로서 전자화폐가 보급되어 획기적인 지급수단의 변화가 초래되고 금융업무가 현실공간을 초월하여 공중통신망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은행이 실현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금융 EDI 단계로서 기업의 거래정보와 은행의 지급결제정보를 모두 전산화하여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기업과 은행간은 물론이고 기업과 기업간의 모든 정보교환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현재 금융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업무자동화와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을 지나 제3단계에 있다.

제 3 절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와 유형

1.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

(1)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제28조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자적 방식

전자금융거래는 종전과 같은 거래당사자간 대면접촉이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이다. 여기에서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

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¹¹⁾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간의 계약이 통상적인 서면에 의하여 미리 거래준비단계에서 미리 체결되고 개개의 거래는 이용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¹²⁾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¹³⁾ 거래지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¹⁴⁾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이 법 제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동조 제2호).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된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나 전화에 의한 통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¹⁵⁾가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¹⁶⁾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12) 정경영, *op.cit.*, p.21.

1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7호.

14) 손진화, *op.cit.*, p.35.

15)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2호 (2003), p.246.

16) 정경영, *op.cit.*, p.21.

다시 말해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이며, 전자금융거래에서는 그러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두가지 능력을 모두 갖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포함되지만, 전화, 전신, 텔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전달능력만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¹⁷⁾도 있다.

음성정보 전달에 그쳤던 종래의 전화기의 기능이 폰뱅킹에 사용되는 것처럼 기기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다른 장치나 사람과의 연결에 의한 기능확대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적 장치의 예로 전화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도 전자적 장치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술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사용될 장치에 대하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이 법 제2조제8호) 등을 감안하면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전자적 장치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물론 전화기, 텔렉스, 팩스 등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할 때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래의 본단계인 개시·처리·종결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금융업무의 이용에 있어 채택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은 같은 조건의 고객 모두가 인정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하고 지급과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7) Ibid.;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3), p.271.

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¹⁸⁾ 정의하고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¹⁹⁾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법」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²⁰⁾ 상법상의 금융거래는 수신·여신의 업무를 통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매개하는 은행거래만을 의미하며 보험, 신탁, 상호부금 등은 금융거래와 구별하여 규정되고 있다(제46조 제15호, 제16호, 제17호).²¹⁾

3. 전자증권거래

(1) 개념

전자증권거래는 미국에서는 ‘온라인 증권거래’라고 부르며, “발행인, 중개기관, 시장운영자들이 컴퓨터 통신망 속의 가상공간 속에서 유가증권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유가증권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20) 상법 제46조제8호.

2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p.58.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람의 접촉을 배제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²²⁾ 투자자는 사이버상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투자관련 정보를 분석·투자결정을 내리고 증권사에 전자적으로 주문을 전송하고, 증권사는 전송된 주문을 접수하여 전자매체를 통해 거래소에 송부하는 일련의 증권거래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증권중개과정을 ‘사이버 증권거래’라 할 수 있다.²³⁾

흔히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를 지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홈트레이딩’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PC통신, ARS 등 유무선 단말기를 통한 주식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증권거래는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회사가 전화, 전보,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자증권거래는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단순히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세를 확인가능 단계이며,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신망을 이용한 ‘홈 트레이딩’(Home Trading) 단계로서 객장에 나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주식의 시세나 잔액 조회 외에 거래할 수도 있지만, 거래는 증권사와 증권거래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거래계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자체 전산망이 없이 별도 PC통신망을 통해 홈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PC통신망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 단계에 있다.

세번째 단계는 ‘사이버 증권회사’ 단계로서 인터넷에 증권사가 독립된 지점을 만들고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영업점 없이 인터넷에서만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다.

22) 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는 라승성, “전자증권의 개념론(하)”, 고시연구 (2003.12.), p.153.

23) 이에 대해서는 김필규,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 자본시장 Weekly, 2008-18호, p.2.

네번째 단계는 ‘사이버 증권시장’ 단계이며, 기존 증권사나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장터를 통해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수료가 없거나 적게 되겠지만, 현행법상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불법일 뿐 아니라, 이중매매나 사기 등의 위험이 많아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앞으로는 무선을 통한 증권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의 발전은 폐쇄형 정보전달체계에서 개방형 정보전달체계로의 이전을 초래하였으며,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전통적 중개역할이 불필요한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온라인 중개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산업내에서 인터넷 기술의 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정보의 분배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온갖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할 수 있다. 자동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는 ① 가격정보제공, ② 증권계좌 개설, ③ 주문의 전달, ④ 주문의 접수 및 매매체결, ⑤ 결제지시, ⑥ 연구자료 제공, ⑦ 사용자간 정보전달, ⑧ 공식적인 통지, 그리고 ⑨ 사업설명서 및 멀티미디어 로드쇼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전달능력은 증권회사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다.

둘째, 정보의 쌍방향성의 응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터넷 활용의 범위의 발전과 더불어 기관들은 증권관련 투자 및 시장운영 업무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① 가격결정모형 및 포트폴리오 위험분석, ② 포트폴리오 회계, ③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④ 채고 수준 등의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금융거래의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으로 이를 실현하는 정보전달의 쌍방향성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시간을

24) 이정범, □□사이버 증권거래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9. p.23.

단축시켜주게 된다. 요컨대, 금융시스템내 정보측면의 모든 것이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사이버증권거래업의 문제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증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증권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들은 고객의 주문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체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체결정보를 전달하는 사이버 증권중개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²⁵⁾ 이들은 고객의 주문을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접수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유가증권 중개업무과정을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증권사들은 대부분 영업점이 없으며, 기존의 증권사보다 매우 저렴한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낮은 수수료는 무점포라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바, 계좌계설, 주문수탁, 결제, 그리고 자금이체 등의 증권중개관련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브로커로는 Charles Schwab, E·Trade 등이 있다.²⁶⁾

(3) 전자증권거래의 규제 필요성

전자증권거래는 투기의 조장, 시스템 장애시의 문제발생, 전문적 지식을 가진 브로커의 비활용 및 사기성 정보입수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저렴한 수수료,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증권거래가 훨씬 용이하게 됨으로써, 주가변동폭을 이용하여 빈번한 거래를 하는 일일거래자(day

25) 김필규, *op.cit.*, p.3.

26) 이정범, *op.cit.*

trader)가 증가함으로써 증권거래에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특히 전산 용량이 폭주하는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증권거래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브로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의거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불확실한 또는 사기성 루머가 난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ID나 비밀번호 도용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우려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안 및 안전 시스템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²⁷⁾ 더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FTA의 체결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에 국경간 증권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시공간을 초월한 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의 잠식이나 교란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4.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사이버 뱅킹)이라 함은 고객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온라인 송금에서부터 가상은행(virtual bank)을 통해 각종 예금 잔액 조회,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대출 신청 등 모든 은행업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은행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더는 이점이 있다.

인터넷뱅킹은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가입자가 제한된 PC통신망을 활용한 홈뱅킹·멤뱅킹과는 다르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대출, 금융정보

27) 이에 대해서는 김인석, “전자금융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우정정보 66(2006), pp.40-42.

28) 오병두, “국제간 전자거래와 형사법적 규율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2007), pp.841-848 참조.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인해 은행 지점의 효용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고 은행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사이버 은행도 있다. 예컨대, 1995년 10월 설립된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는 사무실은 본사와 컴퓨터 센터 두 곳에만 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은 수십명에 불과하며 수표 발행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신용카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금융 부문의 업무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고객정보에 대한 데이터처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새로운 신용등급을 설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다 나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이러한 장점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의 불균형 해소의 파급적인 효과로서 보다 철저한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의 확보라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5. 인터넷보험

인터넷보험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가상정보 등을 개설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마케팅,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거래 방식이다.

고객은 전자서명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보험료 납입현황, 납입방법,

납입기간 등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손쉽게 이를 직접 변경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의 청구, 납입실적 등 제 증명서 발급 등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3월 인터넷을 포함한 신판매채널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자보험 판매의 불법적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통신등에 의한 판매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험의 성격 특히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보험가입이 대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비교적 상품이 단순하거나 및 표준화가 이루어진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절차의 간단함 그리고 내용의 표준화와 비교분석의 가능성 때문에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²⁹⁾

6. 전자지급결제

(1) 발전과 규제체제

전자지급결제는 B2C분야와 B2B분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은행계좌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 그리고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Phone bill) 그리고 메일뱅킹과 같은 새로운 전자자금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향후에는 스마트폰에 의한 지급결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가 전자지급 결제수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카드회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29) 김자봉,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2006(한국금융연구원), pp.23-28.

하는 전자지불대행업체(payment gateway)의 출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최초로 출현하였다.

은행계좌이체는 주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은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³⁰⁾ 휴대폰요금 합산 지불방식은 2000년 10월 정부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겸업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메일뱅킹 및 휴대전화자금이체의 경우 2000년 10월 인터넷업체인 메일캐스터가 최초로 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4월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은 기존의 메일뱅킹서비스와 병행하여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B2C 전자지급결제는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유통금융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2000년 5월 어음제도 개선이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납품업체가 납품완료후 인터넷을 통해 구매업체 거래은행(지급은행)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결제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대신하여 받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1년 2월 개별 은행별로 개발·도입되었으며 현재 B2B 전자지급결제의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업체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30) 카드형은 2000년 6월 및 7월 몬텍스 및 K-cash가 각각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네트워크형은 1999년 6월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IC카드형에 비하여 인프라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인터넷업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10281호인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에는 제22호에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다.³¹⁾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더불어 증권사도 2009년 7월부터 금융소비자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결제구조가 완전히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대 변환을 맞게 되었다.³²⁾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³³⁾에 참가하여 지급결제 등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계좌이체 거래시간을 특정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 Off-Line을 통한 계좌이체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창구송금, 지로납부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편리한 거래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들여다보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며,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거래시장에서의 상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어 뒤늦게나마 입법된 것으로 거래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입법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선광, “상행위개념의 변화와 상법개정”,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별책, 2009.8, p.9참조.

32) 전자금융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 있고,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될 개정 상법에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지급결제거래가 포함됨으로써 상법도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Ibid.

33)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계좌이체, 자동이체, 현금인출기와 같이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지로, CMS공동망 등 5개 핵심 소액결제시스템을 그 참가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과 주요 처리업무>³⁴⁾

시스템구분	주요 처리업무	참가기관수	
		은행	특별참가 ³⁵⁾
어음교환	- 어음·수표의 교환	18	5
지로	- 각종 대금수납, 급여·연금 등의 대량자금이체 - 자동이체	18	7(21)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조회	17	9(25)
타행환공동망	- 청구송금	17	12(21)
CD공동망	- CD/ATM 현금인출, 계좌이체	17	7(15)
CMS공동망	- 자동이체	17	8(24)
지방은행공동망	- 계좌이체, 조회	6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대금 이체	17	
전자화폐공동망	-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17	
PG	- 개인·기업 간 전자상거래	16	
B2B	- 기업 간 전자상거래	15	

지급결제는 거래당사자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통화가치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지급

34) 최윤영, “자본시장법과 지급결제서비스 채널전략”, 지급결제학회지, 제3권 제2호, 2009.12, p.87.

35)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려는 기관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특별참가의 형태로 참가하는데 현재 우체국, 농·수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일부 외국계은행 등이 특별참가하고 있다. 김선광, op.cit.,

수단이란 현금 이외에도 그 소지인이나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표(帳票) 또는 전자적 지급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현금을 이용할 경우 현금지급과 동시에 결제되지만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사용한 지급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이란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상품시장에서 거래환경이 급변하면서 은행의 고유업무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통신회사, 유통업체, 운송업체, 제조업체,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전자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결제구조를 운영하고 있다.³⁶⁾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통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업자에게 호환단말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의2에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교통카드 등)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가 교통요금 지불수단으로도 확대·운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6) 김선광, *op.cit.*, p.239.

지급결제업무의 전자화는 거래시장에서의 지불관련 거래관행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지급결제방법을 완전히 변환하게 되는 획기적인 것으로 실질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46조 제22호에 규정되어 온 시행일을 앞두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한 지급매체별로 다기하게 지급·결제되어지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거래안전도 그에 못지않게 보장되어지거나 보호되어지는지는 아직 미진한 구석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money)³⁷⁾ 1993년 4월 덴마크에서 발행된 Danmont Card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주로 개발되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01년 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카드형 전자화폐는 34개국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는 보안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 2009년 12월 현재 6개국 정도가 상용화를 위한 시험운영 중에 있다.³⁸⁾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37)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김이수, “전자화폐법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2005), pp.272-277.

38) 김선광, op.cit.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등이다.³⁹⁾

전자화폐는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이나 가치소재형 지급수단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화폐는 제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등이다.⁴⁰⁾

전자화폐는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디지털화폐로 나뉘는데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플라스틱카드의 IC칩에 현금과 같은 통화 가치를 내장시켜 이를 상품 또는 금융서비스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것이고, 네트워크형 디지털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통화 가치를 저장하여 온라인망을 통해 디지털신호의 형태로 지급과 결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자화폐의 거래절차는 ① 발행(Issuance) (Settlement) 및 통화 가치의 저장>Loading) ② 통화 가치의 이전(Transfer) ③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발행⁴¹⁾은 통화 가치를 저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시점이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통화 가치를 저장하는 경우에 발행자의 전자계좌에 입금된 현금통화만큼 기장(記帳)된다. 이 경우 통화 가치의 저장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 모바일 휴대전화 및 스마트카드 판독기 등 전자적 장치가 주로 이용되고 이러한 전자적 장치는 전

39) 제2조제15호

40) 제2조제14호

41)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대부분 은행이지만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통신정보업체 및 운송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선광, op.cit.,

자금용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에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게 된다. 통화가치는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에 현금통화액과 동일한 액수만큼 저장된다.

통화가치의 이전은 카드형 전자화폐인 경우 금융소비자가 거래점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게 하고 지급금액을 입력한 후 카드에 내장된 잔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디지털 전자화폐의 경우 원격지의 거래당사자가 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내역별로 통화가치가 이전된다. 결제는 기존의 은행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ATM을 이용한 통신망이나 Dabitmap 또는 신용카드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⁴²⁾

전자화폐의 발행과 통화가치 저장·이전 및 결제는 대부분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동조 제7호의 인증서와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용되는 것이다.

(3) 전자결제시스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음·수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통용되므로 기재오류 및 결제처리구조의 비합리성 등이 증가일로에 있어 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

42) 최근에는 순수한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보다는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형 전자화폐를 네트워크에 겸용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나라도 등장하고 있다.
Ibid.

달에 힘입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연차액결제시스템(Deferred Net Settlement)이 사용되는데,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영업마감 시점에서 참가 금융기관의 총수취금액과 총지급금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최종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으나 결제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박한 부도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⁴³⁾

따라서 급박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발생시마다 건별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실시간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수별로 결제가 완료될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박한 부도상황과 같은 결제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및 외환거래대금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⁴⁾ 하지만 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수별 총액결제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에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완화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자금대출방식 등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⁴⁵⁾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에다가 고도의 거래탐색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과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연속차액결제(Continuous Net Settlement)

43) Ibid.

44) 김선광,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2010.10.27).

45)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의 Fedwire(1982), 일본은행의 BOJ-NET(1988), 독일연방은행의 ELS(1987) 등과 같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다. Ibid.

시스템, 유동성절약(Queue-augmented)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등 혼합형 결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⁴⁶⁾

(4) 전 망

최근의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지불수단을 다양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존의 화폐유통 체계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대출이나 예금과 같은 기능은 그 과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화폐의 저장, 보관, 방출이라는 금융기관의 기존의 역할은 상당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되고 정산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 유통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들이 발행하는 순수한 민간 화폐이다. 만약 전세계 가상화폐 발행기업들이 연계되고, 금융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4 절 미국과 EU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1. 미 국

미국은 연방법 차원에서는 전자금융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 차원의 규제가 있다. 주정부차원에서는 기존의 은행서비스 규제가 일부 전자지급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바, 주정부 은행감독당국은 인허가권한 및 규제권한을 통하여 금전서비스업에 대한 건진성 감독을 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주정부들은 인터넷상의 자금이체 또는 전자자금이체수단 이용이 1) 사업주체가 예금을 수취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고 2) 제3자에게 자금이

46) 함정호/홍승재, “전자금융 발달과 통화정책”, 지급결제학회지, 제3권 제2호, 2009.12, p.123.

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비자 자금을 수취와 같은 이유로 금전서비스(monetary servic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⁴⁷⁾

금전서비스업은 전통적인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을 받거나 상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비은행기관으로서 은행과 거래하기 어려운 고객층을 주된 대상으로 자금이체, 전신환, 여행자수표, 가치저장카드(stored value card)와 같은 지급수단의 판매, 수표의 현금화, 외국통화의 환전과 같이 고객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체적 매커니즘을 제공하거나 지급수단을 대가로 통화 또는 현금을 취득하는 업무를 말한다.

둘째, 일부 연방입법이 전자화폐에 대해 확대적용될 수 있다. 2008년 8월 통일금전서비스법(Uniform Money Service Act)⁴⁸⁾ 마련하여 주정부 간에 차이가 나는 금전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통일금전서비스법상 전자화폐개념에 상응하는 저장가치의 개념은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도구 자체는 개념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도구’를 뺀 단순한 정의를 두고 있다. 금전가치는 “화폐로 상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교환수단으로 사용이 입증된 전자적 기록은 모두 규제대상인 저장가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교환수단은 범용성을 가져야 하며 쌍방간 회계단위에 불과한 폐쇄시스템은 규율대상이 아니다. 통일금전서비스법은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검사, 보고 및 기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에 강제력이 없는 입법권고안에 불과하며 당분간 주별로 상이한 내용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다.

47) 금융감독원, “유럽과 미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규제현황”, 전자금융감독정보 제2002-1호, p.7.

48) 미국 통일금전서비스법에 대해서는 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

2. E U

2000년 9월 EU 의회가 제정한 전자화폐법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0/46/ EC)은 전자화폐는 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로서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고 발행시 액면가치로 통용되며 비은행전자화폐기관을 인정하되,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전자화폐 및 기타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신용공역제외)과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신한 전자매체상의 데이터보관으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제1조).

동 지침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한도가 EUR 150 이하이면서 1) 전자화폐 총발행잔액이 EUR 500만이하이고 EUR 600만을 엄격이 없는 경우, 2) 전자화폐가 전자화폐기관이 속한 그룹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3) 발행지역·발행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적용이 배제된다.⁴⁹⁾

전자화폐업자의 최저자본금은 100만 유로이며, 지급준비금은 전자화폐 발행잔액(현재 잔액과 지난 6개월 평균잔액 중 큰 금액)의 2%이상을 유지(은행 등 다른 신용기관과 동일)하여야 하고, 전자화폐기관은 전자화폐 발행액 이상을 신용위험이 없는 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자는 소지자가 현금 등으로 환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금 조건은 약관에 명시하도록, 환금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EUR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화폐기관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EU 지침에 따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상의 규제대상업무의 하나로 전자화폐발행업을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 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지

49) http://euroa.eu.int/eur-lex/en/lif/dat/2000/en_300L0046.

50) <http://www.fsa.gov.uk/pubs/cp/cp117.pdf>.

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화폐가치를 전자적 장치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비은행기관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비은행전자화폐발행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은행전자화폐 발행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범위와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발행규모가 적고(500만 파운드 미만), 특정 집단(이용가능업체 100개 미만) 또는 특정지역내(4평방킬로미터 이내)에서 이용되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발행자의 최소자본금은 100만 파운드이고, 최소자기 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경영진에 대한 자격요건 규제, 적절한 내부 통제, 경영전략 수립, 기록 보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전자금융제도는 각국의 전자금융환경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외국의 전자금융환경 및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례를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규제의 원칙 및 규제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금융규제법제는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입되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자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본격적인 규제체제는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자금융업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전자화폐 발행을 비금융기관에 대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⁵¹⁾ 아울러, 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

51) EU에서는 전자화폐관련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는 그 지급수단별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규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획일적인 규제는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유연한 규제체도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제 5 절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와 법적 규제

1. 기존의 법체계과 적용상의 문제점

전자금융을 규제하는 법체계는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금융 관련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기타 보관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전자서명법은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적용된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은 지급수단(발행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²⁾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의 근거⁵³⁾가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금지급 확보를 위한 조치(보험가입 등)를 언급⁵⁴⁾하고 있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업자에 대해서 선불카드업자의 상환의무(제22조), 발행권면한도(제24조 제3호), 기타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공탁(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불결제대행업자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으로 보고 결제대행업자의 준

비교적 엄격한 규제하에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영국 등 다수 회원국들이 수용하여 국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2) 강준모,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2010.10. 27).

53) 동법 제13조제2항제10호.

54) 동법 제8조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대하여 그리고 제24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⁵⁵⁾

전자어음법은 기존의 종이어음이 가지는 폐해를⁵⁶⁾ 보완하며 조세투명성 및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어음의 등록·관리를 위한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근거법이 되고 있다. 그러한 폐해에는 무제한적 배서에 따른 연쇄파산 방지 및 종이문서 유통에 따른 보관·물류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사실자료의 보호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전화소액결제 서비스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대행업에서 분리되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로 새롭게 규정⁵⁷⁾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금대행서비스로 계속 수행하던 업무인 관계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 방통위가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금융권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금융권 주요통신기반시설 보호⁵⁸⁾를 위한 ‘통신기반보호법’, 파업·자연재해·전쟁 등에 대비한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56) 강준모, op.cit.

57) 정보통신망법 제53조 내지 제61조. '09.2월 현재 29개 사업자가 방통위에 등록되어 있다. Ibid.

5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금융권 서비스로는 15개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금융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금융회사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리감독을 위한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이 제정되어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전자금융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바, 관련 법규정들이 지식경제부 소관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일부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존의 금융관련법으로 전자금융을 규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업 등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전자금융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전자금융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법의 해석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 등으로 보완하고 있었지만, 전자금융의 명확한 정립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⁵⁹⁾

즉, 종래 민·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 즉 오류정정이나 해킹사고 등을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영역이던 지급결제 등의 분야에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장치가 없는 법률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었다.

15개사의 홈트레이딩서브(주식거래)가 있다. 이들에게는 연간 1회 이상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분석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해킹공격정보분석 및 공유를 위해 금융 ISAC(은행권 : 금융결제원, 증권분야 : 코스콤)이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Ibid. 5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2006.4) 참조.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장치를 정비함과 동시에 전자금융업자 등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 및 감독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⁶⁰⁾

<전자금융과 기존 법령체계>⁶¹⁾

법령 명칭	내용 및 문제점	소관 부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계약,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거래 활성화 및 분쟁처리 등을 주로 규율 전자상거래관련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음	지식경제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효력 등을 주로 규율	지식경제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적 대금지급, 전자결제업자 등에 관한 규정과 이용자보호측면에서 전자결제업자의 의무만 부분적 규율(거래내용 확인, 기록 보존, 분쟁해결 협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기존의 금융 관련법령의 포괄적 감독위임을 근거로 시스템 안전성 확보, 검사 대상, 기록보존의무 등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60) Ibid.

61) 강준모, op.cit.

법령 명칭	내용 및 문제점	소관 부처
	<p>대해 규율(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거가 불명확하고 감독대상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이 곤란</p>	

2. 전자금융거래법

(1) 제정 배경과 원칙

전자금융이체가 증가하게 되면서 1993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4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배경중 하나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의 IT업체와의 전자금융거래관련 업무제휴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상법 등의 기존 규율체계로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⁶²⁾ 등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자결제 이용과정 중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설문응답자 전체(1,575명)의 40.3%로 나타났는데 결제수단별로 전자화폐(60.9%), 휴대폰 및 ARS결제(50.5%), 온라인계좌이체(42.6%), 신용카드(25.6%), 이메일뱅킹(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62)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8. 참고

그 밖에 비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전자금융업 진입에 따라 기존의 금융관련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전자금융업 감독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³⁾ 기존 금융업에 대해서 해당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이라든지 자산운용 기준 등 비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제활동 담보를 위한 관련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과의 업형태(다른 업과의 겸업가능)를 고려 비금융기관에 적합한 감독기준을 반영하는 범규범 수요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하게 된 것이다.⁶⁴⁾

요컨대,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2001년 6월 기준으로 은행업무 처리유형 중 창구거래의 비중이 43.3%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말에는 30.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은 동기간 중 5.9%에서 31.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자화폐, 선불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등 과거에는 없었던 전자지급거래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전자금융사고와 지급결체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금융법률은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 위주로 규정되고 있었다. 또한 서면, 대면거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약관의 불공정성 및 계약당사자 쌍방만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63) 이러한 점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서 모두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비금융기관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64) 강준모, op.cit.

전자금융거래는 우선 비서면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해킹시 손해발생 책임 등을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법률은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여 체계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전자금융은 그 기술적 특성상 금융정보의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현재 규범체계 내에서는 해석상 책임입증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발생시 관련 원인에 대한 입증을 시스템제공자로 하여금 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작업 당시 전자금융 감독을 위한 규정기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적용된 원칙은 1) 최소기준의 제시 2) 규제최소화 3) 모든 금융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규정이 마련 등이 그것이었다. 전자금융 분야는 기술발전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규율은 어느 특정 금융영역이 아닌 전 금융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전자금융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제1조).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적 규정 즉 사법적 규정과 전자금융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정이 단일한 법률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법적 규정과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규제·감독을 위한 공법적 규정에 대한 입법수요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율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보다 용이하고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분야의 진입규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들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와 요소, 이용자 보호 및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범위와 진입규제 및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킹 등과 같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거래기록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결제업체 등 비금융사업자가 금감위 허가과 등록을 마친 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건전성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 통신산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소규모 업체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⁶⁵⁾을 수입·매매·환매·증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말하는데 이를 간단하게 여·수신거래, 유가증권거래, 지급·추심거래, 기타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⁶⁾

여·수신거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증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거래계약은 금융기관대 거래당사자(이용자) 2당사자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⁶⁷⁾

지급·추심거래 등 환업무는 지급인, 수취인을 당사자로 하는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서 거래당사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금지급이라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위임계약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기관이 사무처리를 해주는 3당사자구조를 가진다.⁶⁸⁾ 기타 거래에는 보증거래, 신탁재산 관리, 보험거래와 같이 기술한 금융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래형태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거래를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 없이 또는

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66) 강준모, *op.cit.*

67)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op.cit.*, pp.8-9.

68) 강준모, *op.cit.*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전자금융거래라 본다. 전자금융거래는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별도의 새로운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가 해당업 서비스를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매체에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정보송수신 처리장치 등을 포함한다.⁶⁹⁾

이러한 전자금융의 예로서 인터넷뱅킹, PC뱅킹, IPTV뱅킹, 온라인증권거래, 폰뱅킹, CD/ATM을 통한 자금이체·입출금거래, 사이버몰(Cyber Mall)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증권거래에는 HTS(Home Trading System) 및 ARS를 통한 증권거래 및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증권거래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며 폰뱅킹은 크게 일반 유선전화기를 이용한 텔레뱅킹과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휴대폰뱅킹(wap(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방식 및 IC칩(Chip) 방식, 스마트폰 방식으로 세분)으로 나눈다.⁷⁰⁾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라⁷¹⁾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조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69)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70) 강준모, op.cit.

7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 그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이러한 개념을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은 “전자적 장치”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징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장치를 매개하지 않고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의 개념을 전제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나누고(법 제2조 제11호), 이러한 전자지급수단을 기초로 전자금융업의 유형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법 제2조 및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구분하고 전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하고 후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제2조제8호).

<전자금융업의 유형>

구 분	업종 정의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증표 등을 발행·관리하는 업무 - 2개 이상의 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 5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 -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보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증표 등을 발행·관리하는 업무 -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등의 구입에 사용
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동시에 그 대가의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표 등을 발행·관리하는 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 정산을 대행, 매개하는 업무
전자지급이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이동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결제대금예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서 고객보호를 위하여 결제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전자고지수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하여 대금 청구서 발송 및 지불을 수행하는 업무

거래법의 적용대상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그리고 이용자이다. 금융기관은 동법 제2조제3호 및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설치등에 관한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기관,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거래법 제2조제3호), 각종 특수은행(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은행), 각종 조합·조합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융지주회사 및 지주 전산자회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회사·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에 해당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거래법 제2조제5호). 이러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예로서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 결제중계시스템제공자, 일부 제한적인 경우 하에서 SI(System Integration)업체 등을 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자금융보조라 볼 수 없다.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현행 거래법 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 조치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우회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관련 자료요청 내지 해명을 요구하는 하는 감독검사상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거래법은 규정하고 있다.⁷²⁾

72)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⁷³⁾ 따라서 일반 소비자(개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법인)도 포함된다.

3) 적용대상 금융거래(제3조)

전자금융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 따라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⁷⁴⁾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각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는 해당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거래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 동법 제5장(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을 적용배제하고 있다.⁷⁵⁾

4)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가.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제5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신원·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⁷⁶⁾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실물자체 및 관련정보), 신용카드(실물자체 및 카드

7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

74)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시스템(동시결제), 금융결제원을 통한 차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등이 있다.

75)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2항.

7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정보) 등과, 홍채정보·지문정보·음성정보 기타 개인식별번호(ID)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법상 비밀키(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도 접근장치에 포함되며 앞서 설명한 장치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원칙적으로 접근매체의 발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야 하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미리 이용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였거나 통보 후 일정기간 내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가능하다.

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제8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기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⁷⁷⁾해야 한다(제1항). 다만 1) 개인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담보목적 제공,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전자금융거래약관에 등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만 인정), 2) 법인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보안체계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항).

아울러 금융기관은 이러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특히 피해보험과 관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정보 삭제로 인한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e-비즈 배상책임보험’상 품이 출시되어 일부 사업자가

77) 전자자금이체 사고의 특성상 고객이 은행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소재 입증은 은행 측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지법 98가합106668 판결)가 있다.

기 가입중이며, 손해보험사 공동상품으로 다시 재보험을 들고 있다.⁷⁸⁾ 보험 부보내용은 1)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고객정보 삭제, 변조로 인한 손해, 2) 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3) 위조 또는 부정접근에 근거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손실, 4) 적절한 신분확인 없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따른 고객손실 등이다.

다.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책임(제9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1항).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항).

제2항과 관련된 다른 접근장치 분실(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지는 것과 비교하여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데, 이는 동 접근수단에 충전된 가치를 결국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전자화폐 등의 분실시 사업자가 일정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동조 제3항)

라.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제10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하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따라서 피해자(이용자)는 금융기관이나 전자

78) 강준모, op.cit.

금융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보조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마.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제12조)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효력은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②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지급정보가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동조는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지급이행시기에 대한 분쟁소지를 제거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 전산계좌원장 내지 수취인의 지정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여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취인의 금융기관 계좌 내지 전산계좌원장에 거래지시가 도달하기 전 발생하는 위험은 지급지시인(이체의뢰자 등)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래지시 전송 중에 발생한 사고(전송도중 멸실 등)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부담한다고 명시(거래법 제9조)하고 있다.

바.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제14조)

금융기관등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인의 출금동의가 필요하다(제1항). 이 출금동의의 형태는 서면 또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녹취, ARS로도 가능⁷⁹⁾하며, 출금동의를 받는

79) 채무자와 지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채무자와 계좌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체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외에도 수취인(채권자)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은 출금동의서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인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작성완료되기 전까지 지급인(채무자)은 금융기관등에게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량처리거래 또는 예약거래 시에는 약정에 따라 동의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제2항), 동의철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약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제3항).

사.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제16조)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취인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지급인은 지급효력발생시기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대금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부터 하자 있는 전자화폐를 교부한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가.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이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인(채무자)이 계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수취인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강준모, op.cit.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전자금융거래의 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 금융거래보다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⁸⁰⁾ 이러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은 전문인력, 설비, 인증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구비요소를 갖추고 준비하여야 한다.⁸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서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한해 금감원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대책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업자의 경우 금융기관등과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계약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강제⁸²⁾를 하고 있어 사실상 안전대책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장 및 여러 가지 컴퓨터 운영시스템(OS) 및 브라우저 등장에 따라 공인인증서만을 인증방법으로 허용하는 현행 규제⁸³⁾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권 인증방법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나.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22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추적·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80) 이에 관해서는 김인석, *op.cit.*, pp. 46-47.

81) 이용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의 과제”, *우정정보*, 67(2006), pp.52.-53.

8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8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⁸⁴⁾으로 정한다. 거래기록보존은 최대 5년을 한도로 개별 거래기록의 특성에 따라 단기(1년)로 보존하여야 할 종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보관방법은 전자거래기본법 기타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전자금융거래약관의 제정·변경(제25조) 및 약관명시·변경통지(제24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변경 후 10일 이내 사후보고⁸⁵⁾가 가능하다. 사후보고의 조건으로는 1) 이용자 권익 확대·의무축소 사항, 2) 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변경, 3) 법령개정·금융위 명령에 의한 약관변경, 4)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변경, 5)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약관 사전보고의 경우 해당약관 시행예정일 45일전까지 감독원장 앞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고, 약관심사시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약관변경권고를 할 수 있다.⁸⁶⁾ 다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25조제4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시 약관명시 및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 제정·변경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홈페이지

8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8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

8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약관 변경내용의 게시일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제26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1)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및 기타 다른 법률근거에 따라 정보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

동조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지만 기술한 법률의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인 관계로 비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결제업무에서 파생되는 거래정보 등의 보호필요성으로 인해 규정되게 되었다.

6)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및 업무

가.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등(제28조 및 제29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은 해당업법에서 전자화폐 발행업무가 허용되는 은행 관련기관에 한하고 있다.⁸⁷⁾

8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 이외 ① 전자자금이체업무, ②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⑤ 결제대금예치업, ⑥ 전자고지결제업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업무와 동일하게 일부 금융기관에는 등록이 면제된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은 등록면제가 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전자자금이체업 이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은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⁸⁸⁾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 실무적으로 허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며,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나. 최소자본금 및 허가·등록 요건(제30조, 제31조)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⁸⁹⁾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인 자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제30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1)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며,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31조). 이상 3)과 4)는 전자화폐 발행에 한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89) 민법 제32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재무 건전성 기준>⁹⁰⁾

감독기구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		금융기관 이외 일반기관	
금산법 적용 금융기관	금산법 적용제외 금융기관	전자화폐발행업 (허가)	기타 전자금융업 (등록)
해당법령 경영개선권고(요구· 명령)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 200% 이내 * 금융위 승인시 금산법 적용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가능	부채비율 180% 이내	부채비율 200% 이내

7) 전자금융업 등의 감독(제5장)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동 감독시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 해당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39조제5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전자금융업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1)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기관 주의 또는 경고, 3) 임직원 주의, 경고, 문책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제39조 제6항).

90) 강준모, op.cit.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내지 변경 시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제40조제1항).

금융위는 전항의 계약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 및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관련계약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40조제2항).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와 관련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관련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제40조 제3항,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직접적인 감독·검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심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을 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 판단된다.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 업무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경영업무와 구분계리해야 하며, 관련 업무 및 경영실적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제42조제1항).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기타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특히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중 일부 기준(자본적정성)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2조 제3항).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감독원장은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⁹¹⁾

(3)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양한 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에 대한 정책 및 규제기능은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금융정책적 고려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시장의 형성 및 유효경쟁의 형성과 서비스 보장 및 이용자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중점을 맞추게 된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1) 내지 3)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⁹²⁾

9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항 전단.

92)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4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및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⁹³⁾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⁹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⁹⁵⁾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⁹⁶⁾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과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⁹⁷⁾

93)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2항.

94)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95)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1항.

96)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2항.

97)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항.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⁹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전자자금이체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⁹⁹⁾ 자료제출 등의 요구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¹⁰⁰⁾

(4) 진입규제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초과이윤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지급수단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전자금융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을 양분하여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융감독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자자금이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여타 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금융기관(특수

98)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제1항

99)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2항.

100)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

은행, 신용카드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허가·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등은 등록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¹⁾ 또한 최소자본금 등 허가 및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¹⁰²⁾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비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보다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전자금융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르게 된다. 현행법의 경우에서도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을 허용하게 된 것은 발전된 기반을 배경으로 통신회사 등이 이미 전자자금이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지만 아직 외국의 경우에는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전자화폐 발행이나 전자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건전성 규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등록시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¹⁰³⁾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⁰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등록을 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2조).

10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

102)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1조.

103)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과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104)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과 동 시행령 제24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

또한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2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겸업제한의 취지도 비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6) 퇴출규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등 일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¹⁰⁵⁾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¹⁰⁶⁾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¹⁰⁷⁾

(7) 규제수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목적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로써 위에서 설명한 규제 외에 많은 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약관의 규제(법 제24조), 피규제자의 보고의무(법 제25조), 규제기관이 감독 및 검사권(법 제39조), 과징금부과(제46조) 및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제51조) 및 행정형벌(제49조) 등이 있다.

105)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

106)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3항.

107)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4항.

3. 전자금융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관련 법규정

전자금융은 기본적으로는 단지 전달채널만을 달리하였을 뿐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활동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들은 전자금융의 특성을 충분히 상정하지 않고 마련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제도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안전성을 법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¹⁰⁸⁾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제정된 전자거래법은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거래계약 및 분쟁 처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효력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금융거래가 일반상거래와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만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

2001년 12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보다 잘

108) 강준모, op.cit.

반연하여 논쟁소지가 있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무권한거래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우선 금융권이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금융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로써 전자금융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상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

1) 공인인증서의 도입과 개선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창구직원을 통하여 고객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 또는 제3자가 금융회사 시스템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지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고객입장에서 적절한 이용자 인증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도 대두되고 있다.

정통부, 금감위 등 정부부처는 2002년 5월 전자정부서비스 확대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인인증서 사용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동년

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 부인방지, 문서내용 노출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고 그 효력을 보장함에 따라, 개별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설인증서에 비해 공신력이 높고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다수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의 정부 관련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도 그 동안 금융회사가 가능한 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또한, 최근 은행·비은행, 증권, 보험분야에서 모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은행·비은행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설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시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증권사에 대해서 2003년 1월부터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2003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에는 공인인증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의 인증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무리없이 금융권에 수용되도록 하고, 향후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업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안전성 제고방안을 추진하여왔다. IT 기술의 발전, 최고수준의 인터넷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적 범죄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기관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¹⁰⁹⁾

첫째,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OTP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OTP는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시 마다 휴대용 기기를 통하여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시 사용되고 있는 보안카드는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함에 따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안카드를 OTP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나,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소지하여야 하는 불편과 구입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셋째,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이다.

109) 강준모, op.cit.

전자네트워크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참여기관의 이질성이 증가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적격성, 그리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비은행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참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이들 기관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참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정수준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¹¹⁰⁾ 2010년 6월 30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유일한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새로운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책, IPTV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기술방식이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수용하기에는 액티브엑스라는 제한적인 기술의 사용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공인인증서의 제한적 기술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인증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특히 2009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에서의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공인인증서 인증방법 도입논의

스마트폰의 도입이 촉발시킨 공인인증서 사용의 문제점에 관해 정부는 금융권에서 유일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무총리실

110)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1항.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전자금융거래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있었다.¹¹¹⁾

이 당시 논의는 공인인증서 사용기술인 액티브엑스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다른 인증방법을 도입하자는 논점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공인인증서도 하나의 인증방법으로 인정하되, 다른 다양한 인증방법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결론으로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다양한 인증방법 도입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법의 허용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인증방법은 이용자 인증, 정보처리시스템 인증, 무결성, 기밀성 및 부인방지라는 5가지 기술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원칙 모두를 인증방법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고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의 인증방법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그러한 인증방법의 5가지 기술원칙을 감안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¹¹²⁾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안적인 인증방식으로는 지문, 홍채, 정맥 및 음성 등의 생체정보와 USIM, 및 IC카드 등 보안토큰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정

111) 강준모, *op.cit.*

112)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증방법을 제안하여 평가를 요청할 경우 동 인증방법의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당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하고 신속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인증방식이 주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전에도 지문 정보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이 일부 은행에서도 도입되었지만, 지문등록의 거부감, 인식오류,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증방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사용될 지 알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그 동안의 문제점 및 비용을 감안해볼 때, 공인인증서 방식에 비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은 본사의 전자금융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다양한 인증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외국은행은 인터넷뱅킹시 SSL(Secure Socket Layer)과 OTP(One Time Password)만을 통해 거래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사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공인인증서 제도로 인해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을 주저한 경우도 많다.¹¹³⁾

(3) 비금융회사의 문제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 관련 업무 진입에 대하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받으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의 경쟁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외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3) 강준모, op.cit.

(4) 개인정보 보호

전자금융 환경하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외주받은 비금융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인터넷광고, 쇼핑몰 연계운영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실 등 악영향이 금융본연의 업무에 과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제 1 절 개방 현황

1. 의 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의 물결에 합류하여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FTA의 체결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환점으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1996년 OECD 가입과 더불어 우리 나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선진국 기준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그 후 2년 뒤인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로서는 그 득실을 따질 겨를도 없이 -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타의에 의해 - 금융서비스부문이 다른 서비스 부문 보다 높은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선진국들의 금융업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¹¹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등 자본자유화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으며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득실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의 금융업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이며 따라서 선진국의 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14)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2007.7), p.98.

<OECD 자유화규약에 따른 자본자유화 수준 평가결과>¹¹⁵⁾

	한 국		OECD 전체1)	신흥국2)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2005년	2006년 이후						
전 체	59.4	85.1	89.3	84.2	95.0	86.1	89.1	86.1
A List 3)	76.7	81.7	90.1	86.7	91.7	86.7	91.7	85.0
B List 4)	34.1	90.2	88.1	80.5	100	85.4	85.4	87.8

- 1) 우리나라 제외
- 2)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3) 직접투자,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매각, 자본 시장거래 등 53개 항목
- 4)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입,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매입, 단기금융시장거래 등 38개 항목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수준이나 선진화가 선진국들의 금융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순수한 국내 금융업계에 불리한 역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FTA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상품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서비스 개방 경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은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포트폴리오 투자확대와 국내 금융시장의

115)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은행 2005.12.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왔던 것이다. 1983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자유치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1985년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산취득, 1987년 외국환취급은행 해외은행업 진출 허용과 같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Korea Fund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방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형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5년 WTO의 출범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IMF로부터 외환 차입을 하게 되었고 미국 등은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나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요구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단기간에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부문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는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은행, 증권 부문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 금융서비스기업의 법적 형태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철폐되었다.¹¹⁶⁾

예컨대, 외국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되고 외국환 취급은행의 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국내은행들의 회생을 위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은행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은행을 비롯한 보험, 증권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¹⁷⁾

116) 신용상, op.cit.

117) Ibid.

1999년 1월에는 금융서비스 모드 2(mode 2)이 ‘해외소비’가 증권업 및 해상보험업에 대하여 허용되었으며, 해상보험업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모드1(mode 1)인 ‘국경간 서비스공급’까지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업무중 선물환 외환매매시 실수요원칙 및 실수요증명요건 적용과 같은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폐지되었다. 이밖에 신용정보평가업, 투자자문업 등도 국경간거래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산업 개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 및 대출관련 업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중개업 등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로는 공급될 수 없는 등 아직 몇 가지 제한요소가 남아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과정>¹¹⁸⁾

항 목	연 도	내 용
직접 투자	1983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자유치법의 개정 (일부 산업 제외)
	1985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제외 산업을 축호하고 회사의 지 분보유 허용
	1986	내국인의 해외투자규제완화 및 자유화 시작
	1991	- 50% 미만의 외국인 지분보유에 대한 인가시스템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외국인기업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 -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제한 완화
	1994	- 외자유치법 개정을 통한 국내기업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118) Ibid., p.99.

항 목	연 도	내 용
	1997	-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의 20%를 반드시 투자기업의 자기자본에 의해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제 폐지
	1998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포함, 부동산임대, 도소매, 투지개발, 투자회사 등을 외국투자에 완전 개방, 외국인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조세인센티브 부여, 인가시스템 간소화
	2000	- FDI에 대한 규제를 OECD 표준에 맞게 완화
	2005	- 국내 비금융회사의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 폐지
	2006	-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폐지
포트폴리오투자	1984	- Korea Fund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1985	- 외국인의 주식시장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Korea Europe Fund 개설
	1989	- 외국인간의 국내주식 거래 허용,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지분획득 허용 - 외국환취급은행의 해외 외화표시채권 발행과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거래 허용
	1995	- 비거주자의 국내회사 지분보유율 제한 12%에서 15%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해외 증권발행요건완화
	1998	-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철폐, 국내채권 및 단기자본시장 외국인에게 개방
	2006	- 실수요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유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대상 해외증권 제한 폐지
	2007	- 해외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제 3 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항 목	연 도	내 용
자 본 시 장	1985	-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산취득 허용
	1987	- 정부주도하의 외국환취급은행 해외은행업 개시
	1997	- 외국환취급은행의 스왑, 옵션, 선물거래 전면 허용 -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 투자촉진위해 상업은행 소 유권 규제완화
	1998	- 외국은행과 중개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
	1999	- 국내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허용 - 외국환거래법 제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재정부에 신고하며 외환 관련 사업허가
	2002	- 증권·보험회사의 은행간시장참여 허용
	2006	-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2007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3. 금융부문별 개방현황

(1) 은행 부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은 1950년부터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1967년 시티은행이 최초로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소위 말하는 GATT 체제 하에서 주로 상품의 이동 즉 수출입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제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은 극히 제한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의 개시와 더불어 상품시장의 개방을 위한 GATT체제에서 금융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명확해진 1990년대부터 점진적인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입이 허용되었다.¹¹⁹⁾

또한 외국인에 대한 은행 지분소유제도가 철폐됨으로써 시중은행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외국자본에 의한 외환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²⁰⁾

요컨대,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왔고 WTO의 출범, OECD 가입 및 외환위기의 여파로 금융서비스 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한편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2) 증권부문

증권부문에서의 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 진입은 은행부문에 비해 훨씬 늦었다. 1991년 10월 JP Morgan이 국내지점을 설치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WTO출범과 더불어 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진입 제한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1995년에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최소영업기준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CD(Certificate of Deposit)의 매매 및 증개업무 등도 허용되었다. 1997년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비율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1998년에는 현지법인이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119) 특히, WTO 출범과 더불어 또한 1997년 외환위기의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1997년에는 세계 500대 은행에 한하여 국내 지점설치가 허용되던 규제를 폐지하고 1998년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120) 신용상, op.cit.

외국계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4개의 외국계 증권회사의 현지법인과 15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이들 외국계 증권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5년 유가증권거래실적은 762조원으로 전체 유가증권거래의 7.7% 수준이며 수탁수수료 수입은 5,870억원으로써 전체 시장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¹²¹⁾

(3) 보험부문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보험부문의 개방화는 WTO 출범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5년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에 대한 국경간공급(mode 1)이 허용되었으며 1996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생명보험사에 대한 49%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생명보험업의 국경간 공급서비스가 허용되었으며, 손해보험업도 외국인의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고 장기상해 및 여행선박보험 부문에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1999년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었고 외국보험사업자가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규제와 국내보험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되는 규제 이외의 별도의 소유제한이 폐지되었다.

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은 18.0%로서 2001년 8.6%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209조원으로 국내생보사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저축성 보험은 19.1% 정도이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생보사의 보유계약고는 외국계의 3배 수준에 그쳐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신금융상품에 속해 외국계생보사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²²⁾

121) Ibid.

122) Ibid.

(4) 투자 신탁업

1996년 12월 투자신탁업 지점설치 및 외국인지분 50% 미만의 합작업인 신설이 허용되었으며, 1997년 1월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동년 12월에는 기존 투신사의 외국인의 지분참여제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998년에는 현지법인 설립 및 외국인에 대한 50% 이상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한 제한조치는 거의 폐지되었고 mode 1과 mode 2인 국경간 거래와 해외소비만 미개방상태로 남아 있다.

제 2 절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IMF 외환위기이후 우리 나라 금융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금융인프라의 변화 및 규제, 감독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금융회사의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선진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특히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으로 급속한 대형화가 추진되었으나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주로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은행 관련 비중이 높아 1인당 자산규모가 적을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은행의 대형화는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열세라고 할 수 있다.

겸업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는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업에서 겸업 및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산업

무에 치중하고 있고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편중된 결과 IB (Investment Banking)나 PB(Private Banking) 등의 기타 사업영역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¹²³⁾

또한, 은행산업의 경우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선진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국내 상위 4대은행의 자산수익률은 2005년 기준 평균 1.07%로서 2004년 미국의 1.65%에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세전 수익 규모를 비교할 때도 미국의 12.1%, 영국의 15.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산업의 경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증권회사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16.6%이고 평균단기 순이익은 4천 9백만달러로 이는 2005년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3개사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2004년 미국 골드만 삭스의 7.0%, 일본 노무라증권의 30.8%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 및 대형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¹²⁴⁾

따라서, 경쟁력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¹²⁵⁾

123) Ibid.

124) 한편으로는 금융회사가 대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과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토종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등은 경쟁력 제고라는 면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형화와 겸업화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줄 뿐 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125) 신용상, op.cit.

제 4 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전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와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는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장개방과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FTA는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합의도출 실패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는 국제적인 분업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국부와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2008년 12월까지 421개의 지역적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GATT/WTO에 통지되었으며,¹²⁶⁾ 2008년 12월 현재 230개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RTAs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FTA”라 한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적 무역협정을 FTA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FTA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 제도를 상호 철폐·자유화하고 서비스시장 등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FTA는 비당사국에게는 적어도 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는 불리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현실은 WTO (World

126)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Lastly visited on Jan. 11, 2010).

Trade Organization)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바,¹²⁷⁾ 이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 내에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모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0년대말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FTA를 통한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블럭이 급속히 확대되어 세계무역의 70%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FTA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¹²⁸⁾ 현재,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국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었어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지역경제블럭화가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대외교역 규모가 GDP대비 8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주요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 2월 16일 한국·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가 발효하게 된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아세안 10개국, 인도와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되었으며,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EU와의 FTA 협상이 2010년 10월에 각각 타결되었으나¹²⁹⁾ 아직 발효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과

127) 지역적 무역블럭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 자체 성격으로 볼 때 비참여국들에게는 차별적인 것이며 상호주의적인 무역상의 우대조치가 오직 참여국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WTO체제상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p.301.

128) 지역적 블럭화는 최근에 들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주의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지역적 무역협정은 무역과 통화블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블럭 밖의 비참여국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Ibid., p.302.

129) <http://www.fta.go.kr/user/index.asp>.

FTA 협상중이며, 일본, 중국, MERCOSUR,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등과의 FTA를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이다.

이중 EU 경우, 정식 발효를 위해서서는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한·미 FTA는 세계1위의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인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아울러 EU는 그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이 미국보다 크고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및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한·미 FTA의 금융부문 개방에 관한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와의 형평성 고려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호주와의 FTA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negative)방식,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을 취하는 혼합방식(hybri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가 열거주의방식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GATS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를 추진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포괄주의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제의 구축과 보다 선진적인 금융법제 개선이 완료된 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는 캐나다측이 우리에게 NAFTA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⁰⁾

130) 김두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2010.10.22).

제 2 절 GATS 및 FTA와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1. GATS와 서비스시장개방

(1) 의 의

FTA에서의 서비스관련 분야는 WTO의 서비스관련 협정을 근거로 표현되고 체결되기 때문에 우선 WTO 서비스관련 협정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TS의 목적은 회원국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양허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각종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시키는 것이다. 동 협정은 6부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8개의 부속서, 8개의 각료결정, 1개의 양허 및 각국별 양허표로 되었다.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협정은 조치, 영향의 범위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제공 서비스와 항공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GATS의 적용대상이 된다. GATS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일반원칙으로 하는 GATT와 달리 각 회원국의 개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을 하여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발전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점진적인 자유화를 보장한다.

여기에서 조치의 범위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의한 조치와 중앙, 지역, 지방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는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며 법률, 규정,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회원국에서 취해지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1) 서비스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주재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영향의 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조치는 GATS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서비스 무역의 내용은 진입장벽 형식의 국내규제조치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생산자, 소비자의 이동 및 생산요소의 이동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고 국경간 서비스 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³¹⁾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현지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이동은 Mode 4의 규율영역이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조치 등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 고용에 관한 조치는 GATS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Mode 4에 양허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기업내 전근자 및 업무상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GATS 적용대상이 된다.

회원국의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와 구체적인 의무로 구성된다. 전자는 양허표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최혜국대우, 투명성 등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과 통보의무 등 양허된 분야에서만 일괄 적용되는 의무가 있다. 최혜국대우에 따라 회원국은 다

131)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내에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제품 자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정의되는 Mode 1(국경간 공급)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본국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를 완결하는 Mode 2(해외소비)가 있으며 전자는 국제전화, 운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서비스 자체의 이동 즉 생산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후자는 유학, 관광, 의료 등 소비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내에 주재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서비스 수입국내에 서비스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Mode 3(상업적 주재)와 서비스 수입국내에서 서비스의 공급인력이 주재(상업적 주재여부와 무관)하는 Mode 4(자연인의 주재)가 있는 바, 전자는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지점의 형태를 띠게 되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며 후자는 외국어 교육 등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이 이동하는 것이다.

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른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허용된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적인 규제가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내규제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자격조건,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 구체적인 규율은 후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 형태로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는 각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positive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GATS 제16조에 의거한 시장접근 조치의 유형과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제한의 경우 유형과 예시로서는 공급자 수의 제한조치(주유소 제한 거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한 국적 요건), 거래액 자산총액제한(국내 총금융자산중 외국은행 자회사 및 지점의 금융자산 점유비율을 20%내로 제한), 영업량 산출량제한(스크린쿼터), 총고용인력 제한(회사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율을 총 고용인원 대비 30%로 제한)을 들 수 있다. 둘째 질적 제한으로는 법인형태의 제한(국내인과의 합작투자만을 허용함으로써 단독 자회사창설을 금지)과 외국인 지분제한(외국인 지분을 50%내로 제한하는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³²⁾

132) 김두진, op.cit.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1) 내국민대우

상품 교역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분야에서도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 함은 조약 당사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상품¹³³⁾ 및 서비스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내국민대우 조항은 투자보장협정이나 무역협정 및 GATT협정 및 GATS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삽입된다.

GATS에 의하면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수입된 후에는 자국 동종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내국민대우 원칙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국상품과 수입상품이 동종상품(like-product)인지를 가려내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GATS에서 WTO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양허는 모든 서비스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인 양허와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별 양허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시장접근제한조치, 내국민대우제한조치 및 추가약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양허표는 WTO회원국마다 다르다.

한편, GATT 및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당히 제한적

133) GATT 1994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라 함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 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상품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한·구입·운송·보급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요건(requirements)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s)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은 자국 또는 자국민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자국 영역내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제3조 제1항은 상기 조건들이 수입상품이나 국내상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다. 즉, GATT 및 상품무역협정상의 내국민대우는 각 회원국이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무역관련 국내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의 동종 상품과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된 데 반해, 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 수락내용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GATS상의 내국민 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양허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장벽의 상당부분이 국내규제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품무역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GATT협정’과 달리 GATS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가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양허계획에 포함된 이유는 분야별로 국내규제나 제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거주요건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s Treatment)라 함은 A국가가 외국(B) 또는 A국 영역내에 있는 B국 국민(자연인과 법인) 또는 B국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C) 및 A국 영역내에 있는 C국 국민(자연인과 법인) 또는 C국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혜국 대우를 통하여 A국내에서 모든 국가와 그 국민 및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혜국 대우는 외국인간의 무차별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차별 원칙의 내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는 내·외국민간의 무차별 대우 즉 内外 평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최혜국대우가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간의 무차별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별 무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회원국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혜국 대우원칙을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제2항). 그러나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쌍무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의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

GATT 1994와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이 “관세와 과징금의 부과 및 부과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내국세와 기타 국내규제”를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서비스 무역일반협정상의 최혜국 대우원칙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에 대하여 적용된다.¹³⁴⁾

GATS 제5조 제1항은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FTA는 상당한 분야별 적용범위를 가져야 하고 기존 차별조치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서 GATS 제17조(내국민대우)의 의미상 당사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폐지하도록 규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GATS 제5조의2 규정(노동시장 통합협정, UR협상시 신설)은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되, 그러한 협정은 (a)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b) 서비스무역이 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인력이동을 사전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34)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1992), pp.134-135.

GATS 제5조 제3항은 “지역통합경제 FTA의 당사국이 만약 개발도상국이면 반드시 그들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전체와 개별 산업부문에 대해 GATS 제5조 제1항 제2목에서 규정한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ATS 제5조 각항에서는 GATT 제24조처럼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관세와 쿼터 등의 무역장벽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한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서비스무역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법관념상 어울리지 아니하며 서비스무역의 경제통합영역이 공동의 서비스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GATS 제5조의 입법 초점은 지역적으로 통합한 역내에서의 서비스무역장벽 특히 차별성 조치를 배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FTA는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FTA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FTA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제5조제4항). 또한,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위한 FTA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는 때에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한 90일 이전에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사전통보하여야 한다(제5조제5항).

서비스자유화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FTA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FTA가 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5조제6항).

한편, FTA 당사국은 당해 FTA과 당해 FTA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자

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동 이사회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 이사회는 통보받은 후 작업반을 창설하여 GATS 제5조에 의 합치 여부를 검토·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비스자유화협정 당사국은 그 이행에 대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하고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5조제7항).

GATS 제17조제1항은 각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따라서, 일단 양허를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양허표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이 경우에도 GATS의 제11조(이전 및 지불), 제12조(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제14조(일반적 예외) 그리고 제14조의 2(안보상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할 수 있다.

(3) 금융서비스의 공급 유형

GATS는 서비스의 공급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ode 1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supply)로서 금융소비자가 국내에 있고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 mode 2는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로서 국내의 금융소비자가 외국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그 외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mode 3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서 외국의 금융회사가 서비스 공

급을 위해 국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태로 진입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수반하게 된다. 넷째 mode 4는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서 자연인이 외국의 영역을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자회사의 임원, 회계사 등 전문가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FTA에 의한 금융시장개방과 그 유형

(1) 의 의

FTA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것인가는 당사국들이 분야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칠레 FTA에서도 서비스무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무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였다.

상업적 주체에 따른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국경간 서비스공급형태를 협정 적용대상으로 하되, 서비스 분야중 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 형태가 아닌 공공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전문직 서비스 허가 및 자격 증명이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였다.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공급형태에 대한 현지주재요건 금지와 내국민대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부 분야의 수량규제(QR)현황을 부속서에 명기하였으며 현행규제(Annex I)와 수량제한(Annex II)에 대해서는 추가규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

(2) FTA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유형

그 동안 FTA에 의한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은 자유화 기재방식에 따라 크게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개방방식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개방방식(이하 NAFTA 개방방식)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중에서 GATS 개방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공급형태를 규정하게 된다. 개방 분야에 대해서는 열거주의적 접근방법(positive list approach)을 채택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시장접근(market access),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보장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 자유화 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하는 포괄주의시스템(negative system)을 채택한다. 다시 말해서 ‘업종개방은 열거주의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한다.

이와는 달리, NAFTA 개방방식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앞서 언급한 modes 1, 2 및 4)와 상업적 주재(mode 3) 관련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한,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업종개방 및 규제가 모두 포괄주의방식이며 협정체결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톱니바퀴방식(ratchet mechanism)이 적용된다.

NAFTA의 경우 금융서비스 부문은 최종적으로 멕시코의 광범위한 자유화 수용으로 합의되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멕시코는 점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은행, 증권중개(brokerage)회사,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에 자국시장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이들 회사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자국의 동종회사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¹³⁵⁾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NAFTA에 의거하여 의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들도 NAFTA 회원국의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은행의 시장점유율 한도는 2000년에 폐지되었으나 은행 및 증권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되었다.

한편, 비합치조치란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상업적 주제,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요건 등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규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현행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NCM)와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로 구분된다. 현행유보란 부속서에 별도로 유보하되 기존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서비스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하는 정부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이른 바 ‘추가적 규제금지’(standstill) 원칙이 적용된다.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라 함은 협정 체결후에 추가적인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미래에 그러한 조치의 도입을 전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FTA 체결 당시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책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경간 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연히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소비자에게 일방 당사국의 금융회사가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않고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이다.

한편, 국내 금융규제 및 법률체계가 열거주의방식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NAFTA 방식은 금융서비스 개방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135) Jisu Kim., op.cit., p.889.

있다.¹³⁶⁾ 따라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와 같은 기존의 FTA에서는 GATS 개방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제 3 절 한 · 미 FTA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

(1) 폭 넓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요구

2001년 한국과 미국간의 FTA 교섭비용과 유리한 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며, 양국 각각의 기존 무역 흐름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FTA의 체결로 (제1차적으로는 개선된 무역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리 증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입장으로는 그러한 FTA상의 의무에 따라 국내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더 큰 개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¹³⁷⁾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시장개방의 범위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무역재이므로 현지 진출을 통해서 소비자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후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보다는 FTA의 기타 조항을 특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더 중시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에는 은행업,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 분야, 컴퓨터, 직접 판매, 통신, 시청각서비스, 건축 및 설계, 관광,

136) 김두진, op.cit.

137)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3), p.173.

광고, 배달 업무,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유통,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성인 교육, 환경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미국 경제의 75%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과의 FTA에 포함된 최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반영되어 이들 FTA에서는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으로서는 최초로 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금지된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업이 개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두 FTA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 상거래, 투자(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전문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필수적인 일시적 입국 등이 있다.

(2) 자본규제에 대한 국내적 규제 철폐 요구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이용하여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금융화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이러한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자본(금융)자유화를 제창하여 WTO 체제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¹³⁸⁾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의 FTA도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자본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바로 이를 위해 미국의 FTA 체결에서 최대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138) 신용상, op.cit., p.102.

미국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한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의 추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그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투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의 경우 겸업허용과 네거티브식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영미식 금융시스템을 관철시키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전해온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는 그 협상 막바지에 미국의 요구로 3번째 무역외적 문제를 규율하는 자본규제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는바, 이러한 조항은 미국이 종전에 체결한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¹³⁹⁾ 사실상, 칠레와 싱가포르는 자본규제를 하여 왔는바, 칠레는 자본규제를 통하여 일년이 경과하기 전에 칠레로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는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적용된 적은 없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그러한 자본규제 조항을 거부했지만 이 조항을 받아들일 때 까지 FTA 체결을 유보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선언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¹⁴⁰⁾ 이 조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외환수

139) Sidney Weintraub, "lesson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87.

140) 무역협상이 무역과 정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행위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무역협상과정에서 수입 장벽을 낮출 때 "호혜성", "양보"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미국은 "새로운" 문제, 즉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 앞서 언급한 무역외적 사항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전자상거래 관련 장이 추

지불균형의 긴급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최장 1년 동안 자본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주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FTA의 각 장에 숨어있는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당사국들이 FTA를 어느 정도 시행하여 드러날 때까지는 그 FTA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콜롬비아대학 교수 Jagdish Bhagwati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의 청문회에서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조치는 금융상의 이유로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역협정을 무역외적 문제로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¹⁴¹⁾ 이는 미국이 정계와 학계 모두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주요 타결내용

(1) 의 의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으며 5월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이 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조문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의 그것들과 큰 차이는 없으며, 부속서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개방예외분야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한·미 FTA 제13장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채택한 상대국의 금융기관, 상대국 투자자, 자국의 영토내의 금융기관에의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에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¹⁴²⁾

가된 것은 미국이 경쟁력이 강한 분야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141) Ibid.

142) 한·미 FTA(이하 ‘협정문’) 제13.1조 (적용범위).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경과>¹⁴³⁾

구 분	금융협상관련 주요 내용(정부 발표)
협정문 초안교환 (06.0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는 미개방만을 열거하는 NAFTA 방식에 의거함 -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개방분야만을 열거하는 GATS 방식에 의거함
1차협상 (06.06.0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입장은 국경간 거래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함. -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할 것을 요청함
2차협상 (06.07.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상호간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제시함.
3차협상 (06.09.0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허용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 -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상호교환 - 미국 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간의 동등대우 -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공급 개방 요구 - 한국측은 국책금융기관 FTA협정 적용제외 요구
4차협상 (06.10.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한국) -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 협의
5차협상 (06.12.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관련 작업반 설치 -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를 기존 개방분야(해상, 항공, 운송보험, 재보험)에 한정

143) 신용상, op.cit., p.103.

제 4 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구 분	금융협상관련 주요 내용(정부 발표)
6차협상 (07.01.15~19)	- 국책금융기관 협정적용 배제 요구(한국) - 신용평가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미국) - 농협공제와 같은 유사보험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요구(미국)
7차협상 (07. 2.11~14)	- 인력이동을 통한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를 계리 및 손해사정 등 보험 부수 서비스로 한정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 불인정 합의 - 향후 증권거래소 상장시 외국인 지분제한 허용 합의
8차협상 (07. 3. 8~12)	- 대부분의 쟁점 합의 - 일시적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은 잔여 쟁점으로 남겨짐
협상타결 (07. 4. 2)	- 07년 5월 내용 공개

<한미 FTA 금융협상 주요 쟁점별 타결 현황>¹⁴⁴⁾

주요쟁점	공세(요구)국		비 고
	미 국	한 국	
신금융서비스	○		수용
국경간거래	○		수용
자산 운용업	○		외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
보험 중개업	○		허용
보험부수서비스	○		비대면방식허용

144) Ibid.

주요쟁점	공세(요구)국		비 고
	미 국	한 국	
금융정보처리의 국외위탁	○		자연인이동허용 수용
신용평가업 진출기준 완화	○		국경간거래불허, 진출조건 완화
단기 세이프 가드		○	조건부수용(조건불분명)
급여지급·인사관리·회계 업무 국외본점 위임허용	○		수용
금융정부조달의 내국민대우	○		수용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	○		수용
임원·이사회 국적 거주지 제한금지	○		수용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 FTA 적용	○		협정문에 예외 인정 (한국요구수용)
우체국보험 민간보험사처럼 감독	○		수용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수용

※ 참고 : 한국측(업계 요구 반영)이 미국에 건의한 사항¹⁴⁵⁾

분 야	주요 건의 사항
은 행	자산유지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10만 달러 이하 소액예금 취급 금지 폐지

145) Ibid.

분 야	주요 건의 사항
	지역사회재투자법(CRA)의 적용 배제
	주재원의 미국체류신분(Visa Status) 개선
	입점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간 단축
	신용평가 별도 요구 철폐
증 권	점포당 자격요건 인원수 완화
	미국의 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미국 현지 사무소 과세 문제
	미 현지법인 설립 시 까다로운 설립절차 및 영업 제한
	공모형태의 증권발행 시 SEC 등록관련 절차 개선
보 험	외국보험사에 대한 예치금 차별 폐지
	재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완화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이사회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

(2) 적용대상 금융거래

GATS의 개방대상의 되는 4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mode 3 즉 상업적 주재는 대부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분야는 없겠지만 상업적 주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원칙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내국민대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과 미국금융회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게 되며, 미국 금융회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아니한 제도를 하나의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로 보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소비 즉 mode 2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미국에 가서 거래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도 외국에 나가서 해외금융소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이를 완전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도 있다는 점에서 FTA에서 이를 다룰 문제는 아니다. mode 4인 자연인의 이동 역시 상업적 주체가 허용된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mode 1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부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경간 금융서비스(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는 일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활동을 하고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금융회사의 소재지국은 그 회사의 본사 소재지국 외에도 지점이나 자회사의 소재지국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감독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국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예금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어 국내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를 통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예금시장에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국경간 거래에 관련하여서는 개방 분야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바,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에 체결될 FTA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컨대, FTA의 체결에 따른 금융부문의 개방 수준은 허용되는 mode 1의 국경간 거래의 범위 및 mode 3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완화되는 규제의 범위 및 국내에서의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업무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상당 부분이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i)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상대국의 영역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ii)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대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말한다.¹⁴⁶⁾

한·미 FTA에서 한미 양국은 내국인 대우와 합치하는 조건하에서 상대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가 부속서 13-A에서 규정된 무역관련보험·재보험·보험컨설팅·보험부수서비스(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또는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금융관련소프트웨어 제공 및 전달,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중개를 제외)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¹⁴⁷⁾

한·미 FTA부속서 13-A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만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서비스 및 보험관련서비스 중에서는 (a) 해상운송, 상업항공,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에 관한 위험의 보험(이는 당해 보험이 운송되는 물건, 물건 운송수단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경우여야 한다.) 및 국제통과물건에 관한 위험의 보험,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146) 한·미 FTA 제13.20조제2항 제1문; 한·EU FTA 제7.4조제3목.

147) 한·미 FTA 제13.5조제1항.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그리고 (d) (a)항 및 (b)항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의 보험에 대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c)항에서 정해진 보험중개인 및 대리상과 같은 보험중개(insurance intermediation) 등이다. 또한 컨설팅,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도 보장된다.

그리고 은행서비스 및 보험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서비스 중에서는 (a)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 및 (b)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제공과 전달, (c)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 등이 보장된다.

이러한 약속들은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에 관련한 신용등급부여,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기금관리, 간접투자수단평가, 그리고 채권평가의 부여에 대하여 한국이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이 약속은 (i) 한국내 기업의 신용등급부여, 또는 (ii) 한국내의 여신 그 밖의 금융거래 목적상의 신용조회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의 공급을 허용한 때에는 추후에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의무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¹⁴⁸⁾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상대방 국민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국 국민에 대하여 상대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

148) 한·미 FTA 제13.2조제3항.

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¹⁴⁹⁾ 이 의무는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대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¹⁵⁰⁾

이와 같이 한·미 FTA 및 한·EU FTA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보험을 금융에 보험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는 바,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로서 보험과 보험관련서비스와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 및 금융성을 가진 서비스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¹⁵¹⁾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먼저,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a) (i) 생명보험 (ii) 비생명(non-life)보험 등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중개 및 (d) 컨설팅,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부수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은행서비스와 기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e)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요구불 자금의 수신, (f) 소비자신용, 담보대출(mortgage credit),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g) 금융리스, (h)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i) 보증 및 약정, (j) 자산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계산 또는 고객의 계산으로 하는 환 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거래 (i)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예금증서 등), (ii) 외환, (iii)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iv)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v) 양도성 증권 및 (vi) 금피를 포함하는 기타 유통증서 및 금융, (k)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공모 또는 사모) 증권 발행에의 참여,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l) 자금중개업, (m) 현금 또는

149) 한·미 FTA 제13.5조제2항제1문.

150) 한·미 FTA 제13.5조제2항제2문.

151) 한·미 FTA 제13.20조 및 한·EU FTA 제7.37조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관리, 연기금관리,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n)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o)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p) 신용조회,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e)목 내지 (o)목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금융 서비스이다.

(2)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허용범위

GATS에 의하면, 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로부터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국경간 공급과 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해외소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경계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한편, 국경간 금융서비스로서 개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금, 대출, 증권거래·보험·자산관리·M&A 등에 대한 자문, 금융정보 제공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거래 일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직원 또는 임원이 상대국 영역에 들어와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타국의 금융고객이 금융회사가 위치한 국가를 방문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그러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금융회사와 공정경쟁이 가능한 내국민대우나 최혜국 대우가 보장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거래가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mode 1의 국경간 금융거래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FTA를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한편,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 보험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 등이다. 현재 각국의 WTO 협상 양허안에서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보험산업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선진국들도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거래를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¹⁵²⁾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선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확대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감독시스템의 구축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우리 나라는 제도상의 미비와 개방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여 국내법상 투자자문, 생명보험, 수출입적하·항공·여행 및 선박, 장기상해, 재보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규모 자본이동이 수반될 수 있는 예금·대출 등의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152)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관련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금융(2006), pp.21-25.

국경간 금융거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외국회사의 금융시장 점유율을 높여줌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발전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상업적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진출과는 달리 고용창출, 노하우 이전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그 동안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때로는 현실적으로 규제나 감독이 불가능한 경우마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경간 금융거래는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는 역내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국가(home country)와 이용국가(host country) 가운데 어느 쪽이 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¹⁵³⁾ 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국제보험감독협회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공국가가 주된 감독자인 것으로서 이해한다고 한다.¹⁵⁴⁾ 그리고 이것은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제공국가에서 효과적인 전전성 규제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금융당국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¹⁵⁵⁾

153) 김두진, op.cit.

15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oss-Border Electronic Banking Activities (July 20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Principles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Activities on the Internet (October 2004).

155) 심영, op.cit., p.68.

한·미 FTA상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일반 당사국의 영역내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¹⁵⁶⁾ 따라서 예컨대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가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형식이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협정문 제13.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형식의 서비스 공급은 전술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거나 미국의 투자자인 경우 협정문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국의 금융기관인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각각 처리되게 된다.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공급자의 국외 존재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 단기적 자금이동 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하여 금융서비스 노하우 이전효과 기대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전문가 또는 대형기관들간의 거래에 한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¹⁵⁷⁾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 해상 및 운송보험, 재보험)는 현재도 국경간거래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¹⁵⁸⁾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 등)의 국경간거래를 새로이 개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¹⁵⁹⁾

156) 한·미 FTA 제13.20조제2항제2문.

157)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op.cit., p.7.

15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159) 김두진, op.cit.

한·미 FTA은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제1항과 합치되는 한도에서 이 의무의 목적상 사업수행과 대행(solicitation)을 정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⁶⁰⁾ 그러므로 관련금융법률에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자가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 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에서의 정보처리

한·미 FTA에서 한미 양국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a) 계약체결확인 및 진술을 포함하는 거래 및 거래처리기능, (b)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개발을 포함하는 기술관련기능, (c) 조달, 여행주선, 우편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소 공간관리 그리고 비서서비스를 포함하는 행정서비스, (d)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활동 등의 일정한 기능을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한 주사무소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¹⁶¹⁾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가 미국 해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유예후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제 조건들은 개인정보 보호,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우리 나라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

160) 한·미 FTA 제13.5조제3항.

161) 한·미 FTA Annex 13-B Section C.

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가능,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국내유지 등의 조건 명문화 등이다.¹⁶²⁾

그 밖에도 법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때에는 국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한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인 백오피스(후선업무) 기능을 미국 본점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일부 후선업무기능을 본점에서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부분은 글로벌 경영의 확대라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측에서 요구하였던 투자펀드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후에 재협의를하기로 하였다.¹⁶³⁾

금융기관은 선진국들과의 FTA에서 전산시설,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는 쌍방은 데이터처리가 금융기관의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요구되는 때에는 타방 금융기관이 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식에 의한 정보를 자국의 영역 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¹⁶⁴⁾ 이러한 약속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¹⁶⁵⁾

한·EU FTA의 본문에서는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신의 영역내에 설립된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162)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 p.110.

163) *Ibid.*

164) 한·미 FTA Annex 13-B Section B 1st clause.

165) 한·미 FTA Annex 13-B Section B 2nd clause.

위하여 자신의 영역내 또는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시한 역시 협정 본문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¹⁶⁶⁾

이러한 자료 처리 허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은 하되, 그 경우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¹⁶⁷⁾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예컨대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이 얻게 된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의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맡겨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경우 금융소비자인 우리 기업들의 대출정보 처리 등을 미국 금융회사의 본점에 맡기게 되면 미국 본점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유출된 정보를 국내 기업고객에 대한 인수·합병 등에 전용할 가능성,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일반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시 우려되는 것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이 우려된다.

(4) 공정 경쟁

한·미 FTA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대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상대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비당사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166) 한·EU FTA 제7.43조.

167)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한·EU FTA 제7.43조 나목은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 차원에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고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¹⁶⁸⁾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왕에 타결한 FTA들 가운데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한-EFTA FTA(2006.9.1. 발효)에서 싱가포르나 EFTA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국에 부여하여야 한다.¹⁶⁹⁾

한편,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외에도 관련 협회 가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협회들로 하여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이 상대국의 영업 관련 인·허가권을 남용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두 번째 문제는 업종에 따라서는 협회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협회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그 외국 회사의 국내 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협회 등 금융관련 관련 협회는 한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제3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미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금융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미국측은 우체국 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 바, 우체국 보험과 같이 특혜를 받는 금융업체가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융회사 중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부류들 간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공적인

168) 한·미 FTA 제13.3조.

169) 한·칠레 FTA(2004.4.1. 발효)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제10장(투자), 제11장(서비스무역), 제13장(기업인의 일시입국) 등]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한-ASEAN FTA(2007.6.1. 발효)는 상품무역협정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성격이 강한 금융업체인 우체국의 보험과의 경쟁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상품교역에서의 보조금과 유사한 특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면에서 국내 금융시장 진출 자체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특혜를 받는 금융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미국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미국측은 우체국 보험도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체국 보험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하에 우체국 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상의 특혜를 줄이기로 하였다.¹⁷⁰⁾

또한 미국측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우체국 보험과 유사한 논리로 특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도 농업금융, 학자금금융, 주택금융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공공성이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미국측은 이러한 예외는 인정하였지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의 받아온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5) 규제 투명성

미국측은 규제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투명성이라 함은 문서에 의한 명확한 지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금융

170)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 p.111.

감독 당국의 규제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하며 그 후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⁷¹⁾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한·미 FTA 제13.11조는 “쌍방이 금융기관의 행위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외국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과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금융서비스의 규제적 투명성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¹⁷²⁾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일반적 적용 수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보장한다.¹⁷³⁾ 양국은 제21.1조(공표)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신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a) 자국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당해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하고, (b)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 대하여 그러한 채택하려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c)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하여야 한다.¹⁷⁴⁾ 양국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¹⁷⁵⁾ 양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171) Ibid.

172) 한·미 FTA 제13.11조제1항.

173) 한·미 FTA 제13.11조제2항.

174) 한·미 FTA 제13.11조제3항.

175) 한·미 FTA 제13.11조제4항.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즉시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¹⁷⁶⁾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¹⁷⁷⁾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포함한 요건을 공표하여야 한다.¹⁷⁸⁾

양국의 규제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진행상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당국이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¹⁷⁹⁾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규제당국은 1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⁸⁰⁾ 규제당국은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¹⁸¹⁾

또한 미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로 추진중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 채택과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¹⁸²⁾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176) 한·미 FTA 제13.11조제5항.

177) 한·미 FTA 제13.11조제6항.

178) 한·미 FTA 제13.11조제7항.

179) 한·미 FTA 제13.11조제8항.

180) 한·미 FTA 제13.11조제9항.

181) 한·미 FTA 제13.11조제10항.

18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설명자료.

감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은 실행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여야 하고, 관련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제공한 구술의 행정지도를 서면화하여 제공하고 그것을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 배포할 것, 그리고 이미 행해진 행정지도의 심사과정에서 한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⁸³⁾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¹⁸⁴⁾

이러한 것은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권의 발동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이관하는 것,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며 내부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것,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적기시정조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한·미 FTA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어느 조항도 당사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재무사항 및 개별 고객의 계좌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공시가 법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공개정보에

183) 한·미 FTA Annex 13-B Section D.

184) 김두진, op.cit.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특히 명시하고 있다.¹⁸⁵⁾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융정책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EU FTA에서는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¹⁸⁶⁾

(6) 신금융상품

GATS에서는 “신금융서비스”를 기존의 상품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 협상과정에서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실례로, 미국 등 선진국들은 WTO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15항(금융정보, 금융관련 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및 제16항(자문 및 기타 부수금융서비스)의 제한 없는 양허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협상상대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타국에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융서비스의 life-cycle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과 장래에

185) 한·미 FTA 제13.7조.

186) 한·EU FTA 제7.39조.

출시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¹⁸⁷⁾

한·미 FTA에서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를 개방할 경우 한국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주재하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한편, 각국의 FTA협정의 예를 들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협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추진한 한국-싱가포르,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서는 아직까지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¹⁸⁸⁾

신금융서비스는 협정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¹⁸⁹⁾ 새로 생성된 전자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한·미 FTA과 한·EU FTA에서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¹⁹⁰⁾

한·미 FTA 제13.4(b)조는 협정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존재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

187) Ibid.

188) 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 1994), 멕시코·EC(1997), 멕시코·EFTA(2000), 뉴질랜드·싱가포르(2000), 싱가포르·일본(2002), EC·칠레(2002), 싱가포르·호주(2003), 미국·칠레(2003), 미국·싱가포르(2003), 미국·호주(2004), 미국·모로코(2004), 미·중미(2005), 등. 김두진, op.cit.

189) 한·미 FTA 제13.20조; 한·EU FTA 제7.37조.

190) 한·미 FTA 제13.6조; 한·EU FTA 제7.42조.

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협정문 제13.6조 제2문에서는 이 제13.4(b)조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13.6조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13.6조의 규정이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상대국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외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승인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제출된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한다”는 각주가 삽입되었다.

한편, 현재의 금융감독체계하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감독체계가 지금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앞서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 국내의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분류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분류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개방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아니하지만, 장래의 개방에 대비한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 허가에 대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가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미 FTA 협정에서 금융서비스부문에서 포괄주의(negative)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동 협정과 국내 금융업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반면에 기타 국가들 및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내 금융업

법만 적용을 받는 감독적용의 이원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들이 국적에 따라 차별적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독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비협상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국내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측면을 감안하여 부과되는 경제적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국가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라도 감독이원화에 따른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금융서비스분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고 있는 첨단 금융상품이 개방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빈번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금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새로운 상품 또는 방식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경우,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분쟁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분쟁기구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사후적 소비자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미 FTA 금융협상 진전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신금융상품의 도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바, 이러한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하고 할 수 있으며 2차 협상에서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였을 때, 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때,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때(즉, 지점 또는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그리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국내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신금융상품이 공급되므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신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법 범위 내에서 상업적 주재 형태로만 공급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당국의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개방될 신금융서비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개방에 따른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⁹¹⁾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①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 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

191)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p.104.

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는 이미 모든 금융영역에서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②, ③의 원칙도 결국 사문화된 조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각종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조차 부족하다고 점이다.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대개는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은 판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고도의 수학, 통계학적 논리에 제반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해야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개발은 커녕 그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2006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관련 이익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국내 진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86.7%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금융서비스 수용은 미국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시장잠식만이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금융서비스와 자통법과 관련하여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허가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워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참고 : 한·미·일 3국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잔액 규모

(단위 : 10억 달러)

기초자산	한 국	미 국	일 본
통 화	984	9,282	2,254
금 리	963	84,520	14,160
주식, 신용 등 기타	33	7,675	135
총 계	1,980	101,477	16,549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 2006. 3월말, 미국 일본은 2005년 말 기준)

뿐만 아니라,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군더더기와 다름없으며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점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결국 자통법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의 예에서 보듯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배제한 방식의 M&A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²⁾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제정경제부가 한미 FTA 개시 선언 며칠 후인 지난해 2월 17일 제정방안을 발표했고, 6월 3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자통법은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192)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결국 정부는 미금융자본의 국내진출에 수반되는 문제점 (① 시장잠식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위축 및 경쟁력 약화, ② 고용 및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M&A 확대 및 심각한 국부유출, ③ 금산분리 원칙의 붕괴와 경제적·사회적 갈등 유발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격 반영한 FTA와 금융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다.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규제투명성 강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양자간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초국가적 투기자본이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할 어떠한 규제완화 및 개방조치를 함의한 적이 없음...(중략)... 실제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음...(중략)...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중략)...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이하생략)”□□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중 금융상품의 인·허가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재조합과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금융상품 거래에 관해 열거주의(positive)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단기적 세이프가드 조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제도를 채택하는데 반대하였으나, 투자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제도를 채택하고 또한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협정에 포함하는데 동의하였다.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 즉, 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단기 세이프가드조치는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은 IMF의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경 없이 이동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할 수 있다.¹⁹³⁾

미국과의 FTA에서는 금융분야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발동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한 국내 금융부문의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⁴⁾

한편, 몰수 및 이중환율제는 금지되며 외환규제로 국내에 묵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의 초래를 회피할 것, 경제여건이 개선되면 이를 해제할 것, 내외국 차별 및 국가별 차별을 금지할 것 또한 발동시 즉시 공포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193)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 p.112.

194) Ibid.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작동 조건이 사전 미국에 대한 사전 통보와 승인 등을 필요로 하고, 주식투자자금의 세이프가드 배제, 차입금에 대한 차환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사실 세이프가드 도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론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로서는 세이프가드가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인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전제조건은 절차의 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지, 독일과의 투자차별금지(최혜국대우), 차별금지(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 등 6개이다.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지급결제시스템

FTA에서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and clearing System) 문제는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보유하는 것이 원활한 결제활동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FTA의 이러한 규정을 포함시킨 취지는 외국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국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이용과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금조달 등을 허용하여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가 경제활동 결과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FTA와 관계없이 국내 지급결제만 사용에 있어서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참여자격에 있어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결제제도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제한이 없다.

(9) 상업적 주재 문제

금융기관의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한·미 FTA은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⁵⁾

- 1) 수적 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형식에 의한 것이든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 2) 수적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 요건의 형식에 의한 금융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가치에 대한 제한
- 3) 수적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기준 요건의 형식에 의한 금융서비스운영의 총수 또는 정해진 수적 단위의 조건으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산출의 총수량에 대한 제한 또는
- 4)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존재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

이와 같이 국내 감독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나 현재 극히 일부분야에 대해 양허표상 상업적 주재와

¹⁹⁵⁾ 한·미 FTA 제13.4조.

관련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외은지점의 본점자본금 불인정, ②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③ 증권투자시 외국인 등록제, ④ 상장주식 장외거래 금지, ⑤ 국내 외국계 보험사 설립의 외국 동종 보험사에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BIS 바젤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원칙에서도 외국은행 지점의 감독상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등의 금융선진국들도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IMF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이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의 혜택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25% 이상을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으며 영업상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⁹⁶⁾ 또한 여전히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의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연계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⁹⁷⁾

증권투자시의 외국인 등록제는 외국인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목적의 조치였으나 일부 해외자본 투자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권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인 예탁기관의 국내투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6) 김두진, *op.cit.*

197) *Ibid.*

상장주식 장외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7조 2항에 의거하여 직접투자자에 의한 주식 취득 및 동 주식의 처분, 주식의 공개매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처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상장·등록 주식은 원칙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회피나 편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거래가격, 거래시기 사후신고 등의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전제로 하여 장외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소지를 제거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는 크게 상이한 금융 규제 및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국내영업을 위한 자격요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 감독 및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규제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경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전성 유지 및 제고 차원의 조치로써 필수불가결한 부분과 향후 국내 금융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발전정도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감독체계 및 감독기관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상호인정차원에서 상업적 주재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법규가 없거나 정비되지 않은 부문은 금융시장 발전 및 선진화 측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방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업(credit information) 및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ory)의 개념을 각각 금융정보업(financial information) 및 금융자문업(financial advisory)으로 확대하여 개방을 요구할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분류를 상호 비교한 후 기존 금융상품 및 신종 금융상품 등 금융상품별 개방가능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시점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간의 FTA의 예를 들어 개방을 불인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업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및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해당 규제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 국내 금융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차별성과 무관한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를 검토하고, 국내외 금융회사간 차별적 성격을 띠는 규제에 대해서는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미국이외의 FTA 협상시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예외조치

한·미 FTA는 제13.10조에서 통화·환율·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같이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제1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1)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및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제12.1조(적용범위)제3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금자, 보험가입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보호를 포함하는 건전성을 이유로

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 규정에 의한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및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제12.1.3조(적용범위)의 어느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구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은 제11장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치에 관한 제11.8조(이행요건) 또는 제11.7조(송금) 또는 제12.10조(지급 및 송금)의 규정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급 및 송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가 자사의 계열기업 또는 관련된 인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그 이익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조항의 효력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의 방지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이 장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하위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같은 조건이

우세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 절 EU와의 FTA와 금융시장 개방

1. 의 의

EU 지역의 유로권에서는 전자금융이 단일 통화의 입지를 강화시켜 통합된 금융시장으로의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FTA는 한·미 FTA와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약간의 특징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한·EU FTA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제7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U 역시 미국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시장이 발달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EU FTA는 한·미 FTA에 비교해볼 때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이점이 있다면 negative system을 규정한 한·미 FTA와는 다르게 한·EU FTA가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속서 7-가-1은 허용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모든 FTA에 규정되어 있고 있는 바, 한·EU FTA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부속서 7-가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⁸⁾ 이는 한·미 FTA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한·EU FTA는 향후 체결되는 제3국과의 RTA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상호 그와 동등한 개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⁹⁾ 따라서 이러한 최혜국 대우를 통해 FTA의 확산과 더불어 타방 당사국들이 동일한 개방수준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다만, “향후 체결되는”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 이전에 체결된 FTA의 금융개방수준이 한·EU FTA 보다 높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EU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시장접근

한·EU FTA는 위의 ‘제3절 2 (9) 상업적 주재문제’에서 설명한 1) 내지 3)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²⁰⁰⁾,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4)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협정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는 조치의 하나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서²⁰¹⁾ 결과적으로 유사하다.

198) 한·EU FTA 제7.12조.

199) 한·EU FTA 제7.8조.

200) 한·EU FTA 제7.5조 (시장접근).

201) 한·EU FTA 제7.11조 (시장접근) 2(마)목.

4. 예외조치

한·EU FTA 제7.38조는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사유(prudential reasons)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 (a)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者の 보호
- (b)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통일성과 안정성의 보장

다만 이러한 건전성 조치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의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러한 조치와 합치되지 않는 한·EU FTA의 다른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²⁰²⁾

또한 한·EU FTA의 각 당사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3년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Insurance Supervisors)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법(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자국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²⁰³⁾ 이상과 같이 국제기준이 금융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FTA 당사국의 자의적인 건전성 규제는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 한·EU FTA 제7.38조 2.

203) 한·EU FTA 제7.24조.

제 5 절 FTA 금융서비스개방의 평가와 전망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부문에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부터였다. 당시에는 특정종목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한도가 늘어나면서 1998년 5월부터는 한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형태에 대해 대부분 허용되었다.

또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와 국경간 공급이 해상보험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 투자자문업에 대해 허용되었다. 증권업 및 외환거래의 해외소비도 허용되었다. 은행업 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과 단기 원화증권 발행이 허용되었다.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규정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면 국내 거주자들이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곧 바로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달금리 등의 이점으로 외국의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수의 상품을 선보이면 국내 시장의 잠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우수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전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외 금리

차이도 자금유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경우 잘못하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지고, 심지어는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큰 과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을 본문에 규정하고는 있지만 거래 가능한 범위를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²⁰⁴⁾

한국의 증권, 투신업의 경우 결국 규제는 완화되고 증권업은 주식과 채권투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곧바로 미국 증권사를 이용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지금처럼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선진금융기술의 이전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도 이끌어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외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사항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종류를 법에 열거해 놓은 ‘positive system’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하는 종류를 정하는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것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204) 김두진, op.cit.

한·미 FTA협정과 한·EU협정은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선진국들과의 금융개방은 제도개선과 개혁의 촉진 및 선진노하우 습득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단기적 자본이동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금융선진국들과의 FTA 체결 그 자체가 우리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컨대, 한·미 FTA 금융부문에서는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 바, 이러한 개방스케줄에 따라 제도개선과 대비 단계적인 개방 확대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서비스는 비교역재로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상품 자체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한 추가 개방은 없기 때문에 FTA 금융협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추가개방분야가 금융상품 거래가 아닌 부수적 서비스의 거래이며 양국 금융회사들의 업무 편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개방확대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를 계기로 그동안 제도정비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된다. 국경간 거래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양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과 관련한 감독규정의 마련, 금융감독 위원회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제도의 선

진화 및 투명화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한국 금융제도 및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시에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과 금융관련법의 재·개정이라는 환경변화는 1차적으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미국 금융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 현황>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평균지분율	62.96%	12.36%	17.97%

* 출처 :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6.5.16 기준)

* 은행의 경우 상장폐지된 SC제일은행과 한미은행 포함(2005년말 기준)

<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 및 상장·등록기업 시가총액>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투 신	시가총액
자산 규모	총1000조원	총46조원	총200조원	펀드규모 총160조원	728조원 (등록기업 포함)

제 5 장 FTA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법제개선

제 1 절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는 미국이나 EU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간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자유화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우리 나라 금융서비스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서비스가 낙후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경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의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서로 합의한 한도내에서 상대 국가에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금융의 범세계적 자유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동남아 금융허브 조성이라는 목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서도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유치가 즉 상업적 주재가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 전자금융서비스 등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허브의 기반이 조성된 후에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통신 인프라가 개발도상국 더 나아가 선진국과의 관계에서도 효과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또한 금융정보의 국내집중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국의 금융산업이 세계화의 물결과 실물거점이 없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국가간 금융서비스 거래에서도 국경간 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계획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전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협정과 한·EU FTA협정은 그 내용으로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1. 공정한 경쟁의 확보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던 영역에서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자금융업을 단순히 전달채널만 달리한 금융업의 일부로 이해하여 금융기관만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비금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은 이들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 이는 물론 현재로서는 전자적 지급서비스 제공 분야 등에서와 같이 제한적인 영역이 되겠지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은 일정한 영역에서 하나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한다면 이는 법제도에 의한 불공정 경쟁조건인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체도를 마련하는 때에는 공정경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²⁰⁵⁾

통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전자금융상품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서의 경쟁체제를 형성·발전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지만,²⁰⁶⁾ 그 과정에서 경쟁조건을 파괴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규제법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합목적적 규제원칙을 마련하고 규제기준 및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²⁰⁷⁾

2. 규제체제 확립

규제의 공백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금융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5) 강준모, op.cit.

206) 헌법 제119조 제2항

207) 강준모, op.cit.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은 결국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적 규제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조건이 조성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과 주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다기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자율규제는 전자금융사업자나 회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사업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징계를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자율적으로 가하는 규제이다. 전자금융규제영역은 전문성과 시장접근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영업기준 등은 자율규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금융당국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고 자율규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한 규제업무는 자율규제기관에 부여하고 전자금융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핵심기준의 제시 및 감독권한을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규제체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사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이 지니고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립하여 내부직원의 사기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적 규제제도의 구축 및 외부로부터의 위변조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 등 리스크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규제당국도 규제제도를 리스크관리의 한 방식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리스크 유형에 따른 규제방식을 적극 모색·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문제는 첫째, 전자적 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해킹 또는 위·변조에 의한 사기거래 발생시의 문제, 둘째, 장애, 오류 및 전산시스템의 제약사항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 셋째,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보호 문제 등으로 구분된다.²⁰⁸⁾

한편, 전자금융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전자금융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규제당국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리스크를 즉시 제거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금융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장래 전자금융규제법질서위반에 대한 유인도 제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규제법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와 검사, 적기시정조치, 시정명령, 허가 등의 취소, 과태료, 과징금, 형벌 등의 다양한 체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입증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모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²⁰⁹⁾ 감안할 때, 행정상 제재는 전자금융규제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유용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시장에서의 행정상 제재수단의 확대가능성, 부과기준, 다른 체제조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²¹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진입 및 건전성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8) 장병환,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의 유형과 특징”,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8호(금융결제원, 2007.3) 참조.

209) 이에 대해서는 오병두, *op.cit.*, pp.836-840.

210) 강준모, *op.cit.*

제 3 절 FTA 관련 쟁점별 법적 대응방안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한·미 FTA에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되는 제도적 및 법적 형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²¹¹⁾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통해 국경간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를 불허하고 상업적 주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개개의 신금융서비스상품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authorization)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협정문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는 건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²¹²⁾

일반적으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접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것이므로 국내 상업적 주체(commercial nexus), 즉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²¹³⁾

이러한 경우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면서 금융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보험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

211) 한·미 FTA 제13.6조제2문.

212) 한·미 FTA 제13.6조제3문.

213) 김두진, op.cit.

거래법』 등의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요건 등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²¹⁴⁾

외국에서 개발된 금융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인지는 신금융서비스의 허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²¹⁵⁾ 금융규제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는데,²¹⁶⁾ 금융상품·서비스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관련법에서 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시판·제공이 금지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서비스 규정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및 보험 관련 신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²¹⁷⁾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한미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214) 동지, 심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6) p.69.

215)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p.8.

216) 제3조 내지 제5조.

217) 김두진, op.cit.

마련하고 실제 이루어진 규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요청시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당국간 채널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¹⁸⁾

한·미 FTA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국경간거래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내거래와는 달리 국경간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일반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고객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과 서비스 공급자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사항, 금융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국, 금융서비스영업허가의 내용(예 : 은행업, 보험업, 컨설팅업), 분쟁해결의 방법과 절차(예 : 준거법, 분쟁발생시 연락처 및 방법) 등의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²¹⁹⁾

여기에서 금융규제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등록제·인가제·신고제, 기업에 대한 주기적 보고의무, 행정당국의 조사권한의 법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업의 재무상황, 대상 거래내역(예 : 수출입거래, 기업구조조정, 보험 등) 등의 기업비밀이나 내부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충실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

218) 김두진, *op.cit.*

219) 심영, *op.cit.*, p.69.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²⁰⁾ 한편 한·EU FTA에서는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과 같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전자결제서비스의 허가·등록

최근 스마트폰 도입과 국제적인 지급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결제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도 상륙하고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구매시 외국회사(애플사, 구글사 등)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수령하고 개발자에게 별도로 정산하는 이른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페이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이러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제지원 서비스가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내지 ‘전자자금이체업’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결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우 1) 국내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2) 사법관할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 위반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²²¹⁾

전자금융거래법상 상호주의(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20) 김두진, *op.cit.*

221) 예를 들어 금융업 인허가와 관련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보험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국내법상 보험업으로 인허가를 받고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김두진 *op.cit.*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신용카드 등 외국회사가 신용카드 등 결제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때에는 당연히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²²²⁾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사가 인정한 ‘전자인증’ 방식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가맹점은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²²³⁾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회사의 결제서비스 방식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서비스페이지에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하고, 매 거래시 가입시 등록하였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있는 반면, 최근 해킹으로 의심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한 결제방식은 사용편의성은 확보되었지만, 상기와 같은 국내법의 위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용편의성이라는 장점을 살림으로써 그러한 결제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관하지 않고 매 거래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인증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²²⁴⁾

22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제4호.

22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

224) 김두진, op.cit.

5. 금융정보 해외이전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금융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자체는 물론 그 위탁 금융기관과 거래한 고객(기업과 자연인을 모두 포함한다)의 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충실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 등에 거점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국내법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데이터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외국의 IT시설을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내 금융 IT기업에게는 미국이나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시장에서 해외의 IT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하여 IT기업들은 국내 금융 IT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금융법률에서 ① 개인정보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을 위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 FTA에서는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²²⁵⁾

225) 한·미FTA 제13.10조.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전산시설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시설의 위탁은 관련정보의 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띠게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EU 등은 자국의 국내 금융회사의 전산 시설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산시설의 해외이전과 관련, 이를 업무위탁으로 본다면 ‘금융회사등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서 전산시설의 관련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해외이전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해당 업법에서 금융업 인허가시 전산시설의 국내설치를 조건으로 하거나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아직 해외로 전산시설이 나간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²²⁶⁾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국내에 전산 시설 및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도록 규정²²⁷⁾하고 있어 사실상 전산시설의 해외이전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종사자는 일정한 경우²²⁸⁾를 제외하고는 명의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제1항)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은행·증권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외이전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관련정보는 해외이전(처리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정보와 관련해서 이를 신용정보로 본다면 해외이전이 가능하나, 의

226) 김두진, op.cit.

227) 동 시행세칙 제7조제11호.

228) 법원제출명령, 국세징수법에 의한 자료조사, 국정조사자료, 감독검사목적 등에 한하여 명의인 동의없이도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료정보와 결합된 보험정보는 관련법(의료법 등)에 따라 이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FTA가 비준될 경우 전산시설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이전도 예상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같은 행위가 적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FTA비준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실명법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허용되어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전산실·재해복수센터 국내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요 전산시설을 제외한 기타 금융회사 관련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외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관련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 해외이전시 조치사항 등을 준수²²⁹⁾해야 한다.

229)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였으며 1998년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서비스 분야중 가장 빨리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가 금융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외환자유화를 포함한 자본자유화 수준은 크게 높아져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에 따르면 완전개방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85.1로써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금융 부문의 개방 성과가 다른 부문 보다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여타 서비스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선진금융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큰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i) 재원조달 채널 다양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감소, ii)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iii)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및 합리적 가격 형성, iv) 국내기업의 경영 투명성,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 v)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개선,

vi) 예금자 및 투자자의 위험분산 기회 제공에 따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vii) 국내 규제감독의 선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i)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ii)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iii) 서민금융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 iv)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v)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지배권의 장악 등이 거론된다.²³⁰⁾ 물론 이러한 것은 관련 금융시장이나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등의 금융환경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대효과들이고 실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한·미 FTA협정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은행, 보험,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긍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v, vi,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iii, iv 등의 사항은 전혀 발현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발현되는 영역의 판도가 제한적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²³¹⁾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 또는 한·EU FTA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EU는 제외), 금융자료의 해외위탁 처리의 허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있다.

한편, 최근 범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이용확산으로 금융산업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화폐가 상용화되기 시작함으로써 전자금융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기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의 영역도 일정 부분 허물어지고 있다.

230) 하준경·이석호·구정환, *op.cit.*, p.10.

231) 김두진, *op.cit.*

이러한 전자금융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 금융업은 다양한 금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정보집약적 산업이므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그대로 금융업에 적용되어 금융의 정보화를 발전시켜왔다. 정보처리 기술은 IC칩, 암호화기술, 전자상거래, 컴퓨터기능의 다양화 등이 있다.

한·미국 FTA는 우리나라가 내국인 대우와 합치하는 조건하에서 미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cross-border suppliers of financial services)가 무역관련보험·재보험·보험컨설팅·보험부수서비스(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또는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금융관련소프트웨어 제공 및 전달,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금융부수서비스(중개를 제외)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가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수단 및 규제절차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국경간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²³²⁾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타결한 FTA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부문을 살펴보면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수적 금융서비스만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허용되는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비대면방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어떠한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 하나의 안전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될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여야 하는 특성상 외국어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보험업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232)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 p.104. 및 김두진, op.cit.

있기 때문에 향후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보험사정 등 보험업자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으로도 보험중개사는 국내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재하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국경간 거래를 많을 위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외국의 보험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의 비대면 방식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규모는 시장규모의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보험중개업 분야에서 수출입적하, 해상, 항공보험, 재보험에 한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되 비대면 방식을 채택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보험부수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위험평가, 보험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는 직접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에도 명확한 법규정 없이 위험평가와 컨설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방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이를 FTA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FTA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거래 규모의 확대 등의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들 분야에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지만 FTA를 계기로 등록요건을 신설하게 되므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게 되는 바, 이들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는 사실상 자연인의 국내

방문이 수반되어야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재에도 허용하고 있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중개업 분야에 관련하여 타결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험중개업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양국간 보험중개업의 역사는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도 달라 개방분야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의 보험중개는 보험사를 대신하는 대리인(에이전트) 역할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보험중개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하는 중개(브로커) 역할을 수행해 온데다, 미국내 주요 보험중개업체는 100년 이상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력 및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10여년 정도의 이력을 가진 한국 보험중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보험중개업체 및 시스템의 경쟁력이 일정 정도 갖추어지기 전에는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간 거래 개방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²³³⁾

한편, 자산운용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FTA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을 해외자산 운용사에 위탁 수용. 국내 연기금 등 원화 표시 자산의 운용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타결 내용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외위탁(해외 outsourcing:off-shoring)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맞춤형 상품이나 고객관리시스템 등 신금융서비스와 연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233)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op.cit.

있다. 또한 국내 개인 정보와 기업들의 대출 명세 등 각종 경영 정보를 미국 금융회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후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국내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국경간 공급의 경우에도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간의 거래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²³⁴⁾

한편으로 이에 대해 자산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영역이 포괄되어 금융업종간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써 금융상품개발 개발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금융투자환경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을 제외한다는 요건 또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있는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역시 심각하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미국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이지만, 미국의 주들은 주법에 의해 보험 없이 규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조약의 본질상 미국이 주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FTA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주법을 정비하도록 하며 이러한 면에서 비대칭적인 효력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FTA가 주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조약의 본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지만, 미국 신용평가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허가 조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변액보험과 퇴

234) Ibid.

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상품 취급의 규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생명보험 상품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은 동업종의 외국금융회사의 사업영위에 대해 상업적 주재(mode 3)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국경간 거래를 고려한 감독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감독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FTA에서 금융분야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발효되기 전에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리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선진 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영업규제중심의 금융감독체제에서 위험중심(risk-based)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경간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아가면서 점진적·단계적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금융과 같은 국경간 거래는 각 분야별로 감독체제와 소비자 보호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면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은행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를 전면 허용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시기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주재에 의한 거래에 비해 비록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전자금융거래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가 개발도상국과 국경간 금융거래를 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²³⁵⁾

첫째, 신금융서비스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FTA에 의하여 허용될 예정인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서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 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간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있어서 제공자측에서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장치, 정보처리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을 금지하고, 해외의 정보처리 수탁기관의 허가요건과 그에 대한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인정,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허가요건과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 FTA 및 한·EU FTA이 아니더라도 금융서비스의 규제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촉진과 예측가능성의 증대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의 지배구조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글로벌 경제시대의 필수요건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금융감독당국간 협력도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35) 김두진, *op.cit.*

한·미 FTA은 부속서에서 한미 양국은 소비자보호와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관행을 금지·적발·기소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규제기관에 대하여 조력하기 위한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양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그러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며,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의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비망록 또는 양해와 같은 국제협력메카니즘을 통한 지속적 노력을 촉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²³⁶⁾

236) 한·미 FTA Annex 13-B Section G.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단행본 >

- 김자봉,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2006).
-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
- 문종진,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 총서, 1998.
-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박영사, 2007).
-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법문사, 2006).
-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8.
- 증권예탁원,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2002. 7).
- 증권예탁원 전자증권개발팀, (브리핑 자료) 『전자증권제도』(증권예탁원, 2003).
- 증권예탁원 전자증권개발팀, (내부자료) 『전자증권제도 운영방식비교(요약)』(증권예탁원, 2002. 11).
- 증권예탁원 조사개발부, 『증권거래법 해설: 제8장 제3절 증권예탁원편』(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2주년기념학술대회 특집호) 『비교사법』 제3권제2호 (1996. 12).

한국증권연구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00. 10).

< 논 문 >

강준모, “금융거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 제2호(2005).

_____,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2010.10.27).

김지환,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채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2010.10.28).

김두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2010.10.22).

김인석, “전자금융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우정정보 66(2006).

강임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3).

김필규,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 자본시장Weekly 2008-18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 5. 23.

권재열, “선하증권의 전자화: 볼레로시스템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 제17호(2003. 5).

김선광,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2010.10.27).

- _____, “상행위개념의 변화와 상법개정”,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별책(2009.8).
- 김인석, “전자금융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우정정보 66(2006).
- 김치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1. 11. 30).
- 라승성, “전자증권의 개념론(하)”, 고시연구 2003.12.
-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주요내용과 국내지급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2007.7).
- _____, “한·미FTA 금융서비스관련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금융 (2006).
- 심 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 법연구 제15집 제2호
- 손진화·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재정경제부 제출 연구보고서, 2002. 2).
- 이영중,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및 유형”,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 (2010.10.22).
- 이용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의 과제”, 우정정보 제67호(2006).
- 오병두, “국제간 전자거래와 형사법적 규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2007).
- 김이수, “전자화폐법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2005).
- 이철송,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 · 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2003. 2).
-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考察,” 디지털경제법제 2, 한국법제연구원(2002. 10).
- 정승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방향과 도입효과,” 증권법학회 제86회 정기세미나(2002. 3. 22).
- 정승화,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I):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숍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VIII)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연구』(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1).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 제40호(2001-4분기, 증권예탁원 10주년 특집호).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 · 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 정찬형, “유가증권의 무권화제도”,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적 과제, 『비교사법』 제3권 제2호(1996. 12).
- 증권예탁원, “직접간접운용방식 비교,” 증권예탁원 내부 검토자료 (2003. 5).

- 최범수, “증권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 최승열,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I):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 함정호/홍승재, “전자금융 발달과 통화정책”, 지급결제학회지, 제3권 제2호(2009.12).

2. 외국문헌

- Richard L. Field, “The Electronic Future of Cash: Survey: 1996: Survey of the Year’s Developments in Electronic Cash Law and the Laws Affecting Electronic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27 Rev. Banking & Fin. L., (1998).
- Rebecca Dent, “Developments in Banking and Financial Law: 2007-2008: XII. The Role of Banking Regulation in Data Theft and Security”, 24 Ann. Rev. Banking & Fin. L., (2008)
- Gideon Reitblat, “Develoments in Banking and Financial Law: 2003: XI. Electronic Banking”, 23 Ann. Rev. Banking & Fin. L., (2004).
- Matthew J. Blecher H, “Part I: Panel Report: Panel VI: Financing Electronic Commerce: Security and Reliability”17 Ariz. J. Int’l & Comp. Law, (2000).1
- Bryan S. Schultz, “Comments: Electronic Money, Internet Commerce, and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 Call For New Federal Guidances”, 67 U. Cin. L. Rev., (1999).

참 고 문 헌

- Cymonie Rowe, “Note & Comment: Technological Advances in Banking: A Move to a Global Economy”, 4 ILSA J Int’l & Comp L, (1998).
- Michael P. Malloy, “Article: Bank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25 Iowa J. Corp. L., (2000).
- Emmanuel T. Laryea, “Article: Payment for Paperless Trade: Are There Viable Alternatives to the Documentary Credit?”, 33 Law & Pol’y Int’l Bus., (2001).
- Carl Felsenfeld* & Genci Bilali, “Article: The Check Clearing for the 21st Century Act--A Wrong Turn in the Road to Improvement of the U.S. Payments System”, 85 Neb. L. Rev., (2006).
- Eugene M. Katz*, Theodore F. Claypoole, “Article: Willie Sutton is on the Internet: Bank Security Strategy in a Shared Risk Environment”, 5 N.C. Banking Inst. (2001).
- John L. Douglas, “Article: Cyberbanking: Leg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Banking Organizations”, 4 N.C. Banking Inst., (2000).
- ALI & NCCUSL,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2002 ed.(M.N.: West Group, 2002).
- Baumer, David & Poindexter, J. C., Cyberlaw & E-Commerce(N.Y.: McGraw-Hill, 2002).
- Cox, James D., Hazen, Thomas Lee & O’neal, F. Hodge, Corporations(N.Y.: Aspen Law & Business, 1997).
- Deltan George B. & Matsuura, Jeffrey H., Law of the Internet(N.Y.: Aspen Law & Business, 1999).

Ford, Warwick & Baum, Michael S., Secure Electronic Commerce(N.J.: Prentice-Hall, 1997).

Yang, Bo, Digital Checks, Payment Technologies for E-Commerce, Weidong Kou, ed., Berlin, 2003.

AB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3rd Edition Official Text Revised through 2002, <http://www.abanet.org/buslaw/library/onlinepublications/mbca2002.pdf>.

Bolero.net, “Legal Aspects of a Bolero Bill of Lading,” <http://www.bolero.net/downloads/bbls.pdf>.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of 1999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http://www.law.upenn.edu/bll/ulc/fnact99/1990s/ueta99.htm>.